

중국 외자기업 청산절차

매뉴얼

2008. 1. 17

kotra

中國地域本部

목 차

I . 청산개요	1
II . 청산 절차 및 단계별 체크포인트	3
III . 세금분석	17
IV . 『新파산법』 특징 및 파산절차	20
V . 결론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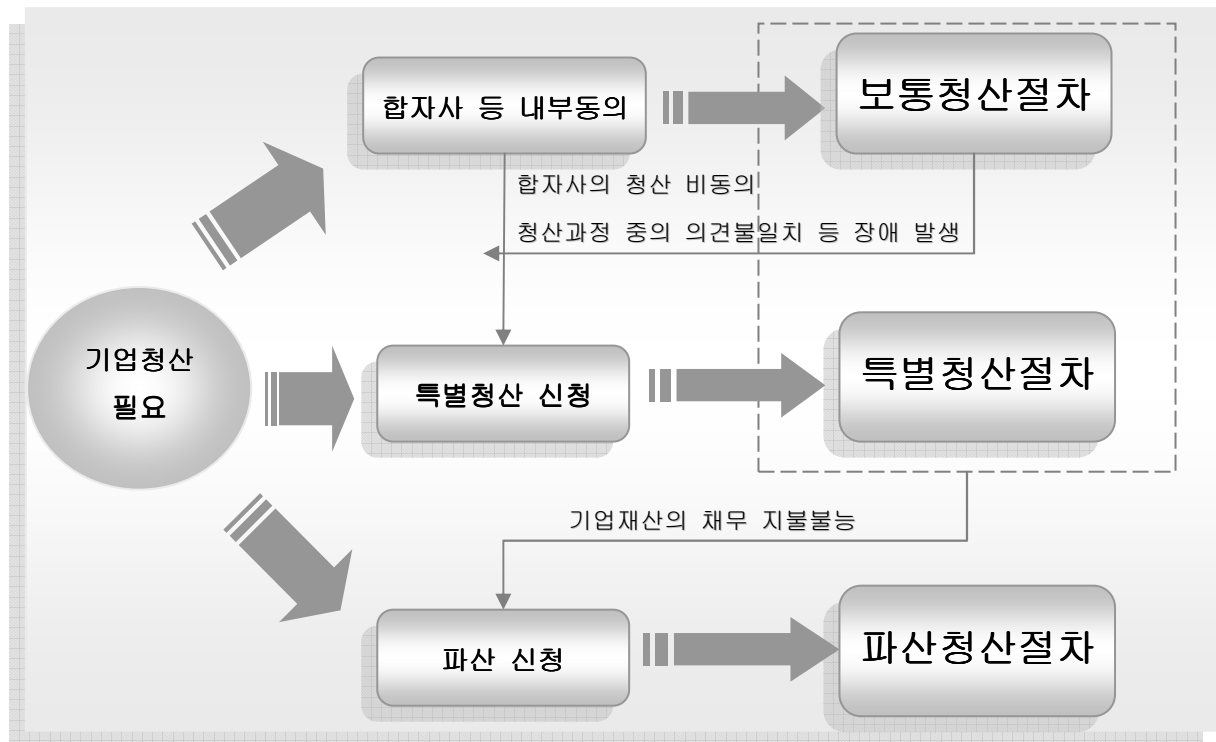
[참고자료]

- ☐ 청산기업 회계 세무 처리 사례 / 39
- ☐ 면세수입설비의 청산절차 / 42
- ☐ 중국 외자기업 청산방법, 파산법 원문번역 / 48

I. 청산 개요

청산이란 회사를 해산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중단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하며, 외상기업의 청산절차는 1996년 7월 9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기업청산방법(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이하 ‘청산방법’으로 함)이 적용되고 있다.

【기업청산의 간략도】



- ◆ 청산은 보통청산, 특별청산, 파산청산으로 나뉘며, 보통청산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청산 시 청산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 특별청산이란 기업이 청산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심각한 장애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업 최초 투자허가기관이 기업이나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청산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 ◆ 파산청산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에서 주주, 관련기관이나 관련자를 소환하여 파산관리인이 진행하는 청산절차를 의미한다. 기업이 파산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에 따라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보통청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이사회, 투자자 혹은 채권자는 기업심사비준기관에 ‘특별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산 과정에서 기업재산이 채무를 충분히 변제를 못할 경우, 청산위원회는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고하여야 하며 법원에 의해 파산 신고를 받은 기업은 파산 관련 절차에 따라 ‘파산청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유의점】 - 보통청산과 특별청산

특별청산은 보통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기업의 자주성이 발휘되기 힘들며, 실무적으로도 관련정부기관의 책임권한 등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진행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청산절차의 개시 전과 청산과정 중에 보통청산절차를 이용하여 기업정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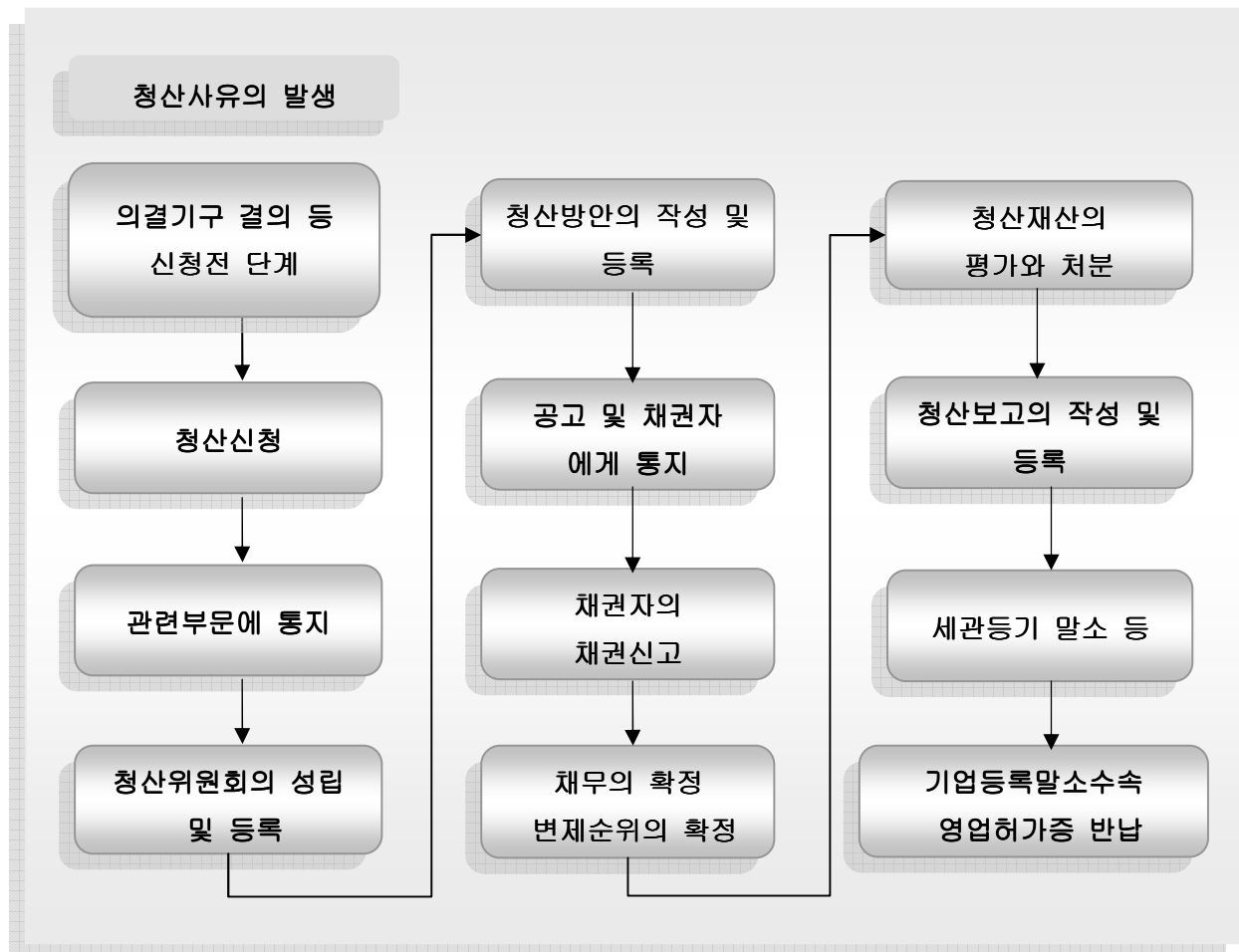
- ◆ 합자사가 청산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합자사가 청산자체에 동의하지만 청산과정에서 쌍방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보통청산’ 절차에 따른 청산에 심각한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투자자 혹은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청산’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 ◆ ‘특별청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기업은 청산위원회를 자주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심사비준기관이나 그가 위임한 기관이 투자자 관련기관 대표, 관련 전문인원 등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며 청산위원회 주임은 심사비준기관이나 그가 위임한 기관에서 지정하게 된다. 즉, ‘특별청산’의 경우 기업은 청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청산위원회 구성 인원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청산절차에 대한 적극적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
- ◆ 실무상 ‘특별청산’의 경우 청산위원회가 채권자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채권자회의는 채무의 변제상황, 청산방안에 관하여 청산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므로 청산기한이 길어지고 ‘보통청산’보다 청산비용이 증가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 ◆ ‘보통청산’의 청산방안과 청산보고서는 심사비준기관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특별청산’의 청산방안과 청산보고서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청산방안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적 결정권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청산기한을 단축하고 청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청산 개시전과 청산 진행 중에 합자사와의 충분한 협상을 통해 ‘특별청산’ 절차의 개시를 가능한 방지하여,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기업의 자주성이 발휘될 수 있는 ‘보통청산’ 절차에 따라 청산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청산절차 및 단계별 체크포인트

【기업청산의 주요절차도】



1. 청산사유

외상기업은 일반적으로 경영기한 만료, 심각한 경영상 손실로 인한 해산결정, 불가항력으로 인한 심각한 손실로 인한 경영불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또는 합병 방법이 합병기업협의, 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합병기업이 그 경영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발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은 사유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신청전 단계

청산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은 의결기구를 통해서 청산을 결정하게 된다. 청산의 결의는 동사회 등의 의결기구 전원일치로 통과된다. 청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단계에서 충분한 준비와 협의를 함으로서 불필요한 비용과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유의점】 - 준비단계에서 유의 및 고려사항

청산기간은 원칙상 최장 27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청산절차를 정해진 기간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합자사 및 채권자, 노동자 등과 청산과정 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청산기간이 길어지거나 보통청산이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거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 채권자와의 사전협의: 청산개시 전에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협의 혹은 청산기간 중에 채권등록을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줄여야만 청산절차가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 청산방안에 대한 협의: 청산방안은 청산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청산 코스트, 청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산개시 전 기업과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본방안에 관하여 합자사와 협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 ◆ 등기말소처분에 대한 주의: 실무 중 청산준비상태에 있는 기업이 청산신청을 하는 과

정에서 기업공상년도검사를 태만히 하여 공상등기기관으로부터 등기말소처분을 받는 상황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등기말소처분을 받게 되면 ‘보통청산’ 절차에 의한 청산이 상당히 어려워지므로 기업청산에 관한 비준을 받기 전에 기업공상년도검사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반드시 기업공상년도검사 등 필요한 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 기업재산의 처분: 청산개시 전 180 일내에 발생한 ① 기업재산의 무상양도, ② 비정상적 덤핑가격에 의한 기업재산의 매각, ③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 ④ 채무의 만기도래 전 상환, ⑤ 청산기업 채권의 포기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간주되므로, 관련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청산개시일을 주의깊게 계산하여 처분해야 한다.
- ◆ 청산 중 영업문제: ‘청산방법’에 의하면 청산기간 중 기업은 새로운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실무중에서도 청산기간중 청산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업경영활동을 진행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기업은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청산개시일을 기업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재고상품 경우, 청산개시 후 청산재산으로 처리를 한다면 처분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요한 재고상품은 청산개시 전에 시장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손실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무 중 대부분의 외상기업청산의 경우, 청산개시 전 대부분의 경영활동을 마무리 짓고 청산을 개시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기업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청산개시 전 주요한 경영활동을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경영손실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3. 청산신청

- 1) 기업권력기구가 해산결정을 내리면 기업은 기업 설립 시 심사비준을 받았던 기관(이하 ‘원심사비준기관’으로 함)에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 2) 기업이 청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 및 《외자기업법실시세칙(外资企业法实施细则)》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부합해야 한다.

A) 외자기업의 경우

외자기업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된다.

- A. 외자기업의 경영기한 만료
- B. 심각한 경영상 손실로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
- C.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심각한 손실로 경영불가
- D.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B, C 의 경우 기업종료신청서를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일이 기업의 종료일이 된다. (외자기업법실시세칙 제 72 조)

외자기업이 위의 사항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15 일 내에 대외에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고를 한 날로부터 15 일 내 심사비준기관에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외자기업법실시세칙 제 72 조, 제 73 조)

- E. 중국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을 훼손하여 법에 의해 말소되는 경우

E 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통청산절차가 아닌 특별청산절차에 따르게 된다.

B) 중외합자, 합작회사의 경우

중외합자, 합작기업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된다.

- A. 외자기업의 경영기한 만료
- B. 심각한 경영상 손실로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C. 합영 일방이 합영기업협약, 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D.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심각한 손실로 경영불가
- E. 합영기업이 그 경영목적 달성을 할 수 없고, 발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 F. 기타 합영기업계약,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B, D, E, F의 경우 동사회가 해산신청서를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며, C의 경우 계약의 일방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제 90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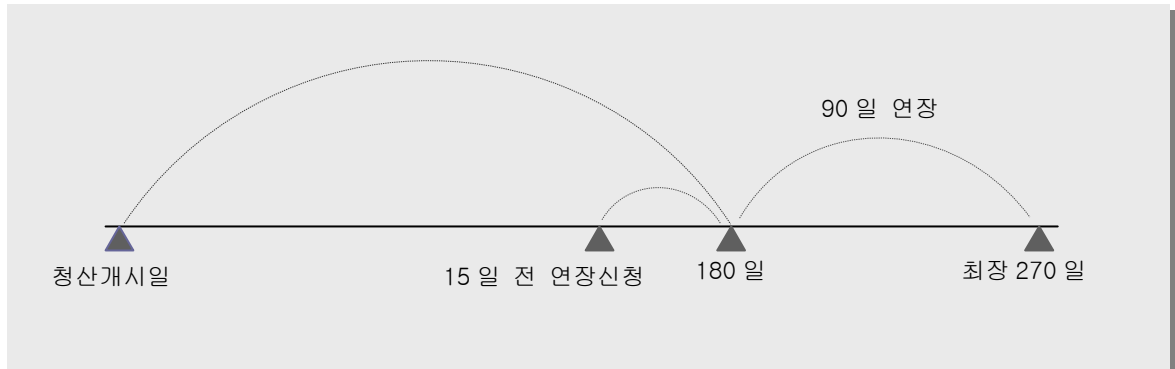
3) 신청

- 4) 시에 원심사비준기관에 신청서 및 기타 필요서류들을 제출한 후 청산을 동의하는 내용의 비준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원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일로부터 청산절차가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	신청서 申请书	이사회 결의 董事会决议	청산위원회 성원 명단 清算委员会成员名单	투자자의 계약 投资者协议
	직원 배치 설명 职工安置说明	험자보고 验资报告	사전 종결 계약, 정관 提前终止合同章程	회계심사보고 审计报告
	이사회 명단 董事会名单	원 비준증서 原批准证书	원 계약, 정관 原合同章程	

*주) 상기 필요서류는 상해시외자위원회의 요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신청시에 해당지역 심사비준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유의점】 - 청산기간



외상투자기업의 청산기한은 청산개시일로부터 기업심사비준기관에 청산보고서를 회부한 날까지이며 원칙적으로 최고 180 일을 넘지 못하고, 특수한 상황에 의거 청산기한을 연기해야 할 경우, 청산위원회는 청산기한 만료 15 일 전에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기관에 청산기한 연기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기한은 최고 9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기업의 청산개시일은 기업의 경영기한 만료일 또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이 기업의 해산을 비준한 날 또는 기업계약의 종료를 인민법원이 판결하거나 중재기구가 결정한 날을 말한다.
- ◆ **실무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청산법정기한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청산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일괄적으로 청산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商务部关于请对中外合资经营企业合营各方出资及外商投资企业清算相关行政法规条文具体应用问题予以解释的函(商法函[2004]27 号)제 4 조) **가능하면 청산기한 내에 청산을 완성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적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한다.**
- ◆ 청산기간 중에 기업은 새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만일 청산기간 동안 기업이 새로운 경영활동을 개시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청산방법 제 44 조). 단 기업 재산이 감소되지 않기위한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은 상기 법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商务部关于请对中外合资经营企业合营各方出资及外商投资企业清算相关行政法规条文具体应用问题予以解释的函(商法函[2004]27 号)제 5 조).

4. 관련부문에 통지

외상투자기업은 청산개시일로부터 7 일 내에 기업의 명칭, 주소, 청산원인, 청산개시일자 등을 기업 원심사비준기관, 기업주관부문, 세관, 외환관리기관, 공상등기기관, 세무기관, 기업구좌 개설은행 등 관련부문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만약 청산기업에 국유자산이 있다면 반드시 자산관리행정주관부문에 통지해야 한다.

5. 청산위원회의 성립

청산개시일로부터 15 일 내 일반적으로 공상행정관리국에 청산위원회 구성원명단(清算委员会成员名单)을 제출해야 한다.

(1) 청산위원회의 구성

외상투자기업은 청산개시일로부터 15 일 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인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1 명의 주임을 선임하며, 기업의 권력기구가 임명한다. 기업권력기구의 동의를 거쳐 청산위원회는 구체적인 청산사무를 처리할 업무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

청산위원회의 구성원은 해당기업의 의결기구 인원 중에서 선정하거나 전문인원 초빙을 통하여 임명될 수 있다. 실무 중에서 흔히 회사 의결기구 인원 중에서 청산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정하는 이외에 회계사, 변호사를 각 한명 정도 초빙하여 청산절차에서의 법률적 문제 및 회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청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2) 청산위원회의 권한

청산위원회는 청산기간에 아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기업의 재산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청산방안 작성
- ②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고, 채권자에 대한 서면통지
- ③ 청산과 관련된 기업의 현안 업무처리
- ④ 재산 평가 및 근거 제출
- ⑤ 미납세금 청산
- ⑥ 채권, 채무 정리
- ⑦ 기업채무 상환 후 잉여재산 처분
- ⑧ 외상투자기업 대표로 민사소송 참가

(3) 청산위원회의 주요업무

이렇게 구성된 청산위원회는 회사의 청산과 관련된 현안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청산위원회가 성립된 후, 기업의 관련책임자는 청산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기업의 회계보고, 재무장부, 재산목록, 채권자와 채무자 명단 및 청산과 관련한 기타 자료를 청산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자산대차대조표, 재산리스트, 청산방안을 작성하고 재산가격평가와 계산근거를 기업의결기구의 확인을 거쳐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재고이익 또는 재고손실, 처분, 상환할 수 없는 채무 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청산기간의 수입과 손실 등을 기업의 의결기구에 서면으로 원인을 설명하고 증명의 제시와 청산손익에 산입해야 한다.

【유의점】 - 청산방안의 작성

정식 청산방안의 작성은 청산위원회의 권한이지만 청산방안이 청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청산개시전 합자사와 청산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청산의 순조로운 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 청산과정에서 있어서 청산방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산기한이 길어지거나 ‘보통청산’ 절차에 따른 일반청산을 진행하는데 청산방안으로 인한 장애가 생겨 ‘특별청산’ 절차로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청산 코스트, 청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산개시전 기업과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본방안에 관하여 합자사와 협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 ◆ 청산에서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청산방안은 전문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의 자문을 기초로 수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공고 및 채권자에게 통지

청산위원회는 성립일로부터 10 일 내에 확인된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60 일 내에 전국 일간지 1 종과 청산법인 소재지 성급 혹은 시급 신문 1 종에 최소 2 회의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청산공고문에는 기업명칭, 주소, 청산원인, 청산개시일, 청산위원회의 연락주소, 구성원 명단 및 연락인 등을 명시한다.

【유의점】 - 채권자 통지 및 공고

주의하여야 할 점은 외상투자기업이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지 않거나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등록기관이 그 시정을 명하고 중국 인민폐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청산방법 제 45 조) 청산 관련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규정에 부합되는 일간지 혹은 신문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

7. 채권자의 채권신고

채권자는 통지 접수일로부터 30 일 내 청산위원회에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통지

를 접수하지 못했을 경우 제 1 차 공고일로부터 90 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보고를 해야 한다.

채권자는 위의 규정된 기한 내에 채권보고를 해야하며, 아울러 채권액 및 채권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신고기한 내에 채권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게 된다.

- A) 이미 확인된 채권자의 채권은 청산에 산입
- B) 미확인 채권자의 채권은 기업잉여재산의 배분완료 전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음
- C) 잉여재산 배분된 후에는 채권포기로 간주

8. 채무 및 변제순위의 확정

청산위원회는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을 등록하고 심사확인한 뒤 그 결과를 채권자에게 서면통지하며 채권자는 확인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는 서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 여전히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 서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내에 기업 소재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청산비용과 기타 채무의 변제

청산기업은 청산재산에서 청산비용을 먼저 지불한 후에 기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청산비용, 채무변제 순위】

청산비용	① 외상투자기업 청산재산의 관리, 매각, 배분에 소요되는 비용
	② 공고, 소송, 중재비용 등
	③ 청산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기타 비용

기타채무	제 1 순위 : 종업원의 급여, 근로보험비
------	-------------------------

우선순위	제 2 순위 : 미납된 국세
	제 3 순위 : 기타 채무 등

(2) 직원의 경제보상금

기업청산 시 대부분 직원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므로 노동계약해지에 따르는 경제보상금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각 기업은 직원과의 노동계약을 해제할 경우, 기업의 등록된 지역의 관련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보상금은 직원의 급여로 인정되므로 청산재산에서 우선 청산비용을 지불하고 난 다음 제1 순위로 경제보상금을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지불하여야 한다.

합자, 합작회사의 경우 합자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투입된 직원의 수가 훨씬 많다면 청산절차 개시전 투자자 각자가 자기 사업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직원의 노동계약해제 및 경제보상금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관하여 합자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청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처리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유의점】 - 채권자 이익 및 청산비용 지불

- ◆ 주의하여야 할 점은 청산위원회는 소송, 혹은 중재기간에 그 분쟁대상재산을 배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산개시 전에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협의 혹은 청산기간 중에 채권등록을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줄여 청산절차가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 청산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기업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기업재산을 배분할 수 없다. 즉, 청산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기업재산만을 투자자의 실제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 ◆ 외상투자기업이 청산 진행 중에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명세서에 허위 기재한 경우, 또한 앞의 설명처럼 청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거

나 기업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기업의 재산을 배분했을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이나 기업등록기관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등록기관은 기업이 은닉한 재산, 또는 채무변제 전 배분된 기업 재산액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책임이 있는 자에게 중국 인민폐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청산재산의 평가와 처분

청산재산의 가치평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①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름
②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투자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뒤,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③	계약서 및 정관에도 규정이 없고, 투자자 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청산위원회가 국가의 관련규정 및 자산평가기구의 의견을 참조하여 확정된 뒤,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④	법원이 외상투자기업 계약종료의 판결을 하였거나, 중재기관이 기업의 계약종료를 결정하고 청산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판결, 혹은 결정에 따라야 함

【유의점】 - 청산재산의 처분

- ◆ 청산재산을 매각할 경우 높은 가격을 신고하는 측이 매수할 수 있고, 동일한 가격인 경우는 기업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다.
- ◆ 청산재산의 평가와 처분시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에 규정이 우선시되므로 기업은 설립시에 합자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평가방법을 정함으로서 자산평가에 대한 기업의 자주성을 최대화 할 필요가 있다.
- ◆ 청산개시 전 180 일내에 발생한 ① 기업재산의 무상양도, ② 비정상적 덤핑가격에 의한 기업재산의 매각, ③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 ④ 채무의 만기

도래 전 상황, ⑤ 청산기업 채권의 포기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간주되므로, 관련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청산개시일을 주의깊게 계산하여 처분해야 한다.

- ◆ 청산개시일로부터 청산완료일까지 투자자는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기업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고 투자자가 청산기간에 기업재산을 처분할 경우, 기업심사비준기관이 처분재산의 원상복구, 혹은 반환을 명하며 만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0. 청산보고의 작성 및 등록

청산위원회는 청산절차의 개시시에 작성한 청산방안에 따라 청산업무를 끝낸 후 청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산보고서는 의결기구의 확인을 받은 다음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 등록하여야 한다.

【유의점】 - 청산보고서

- ◆ 청산보고서에는 ① 청산의 원인, 기한, 과정, ② 채권·채무 처리결과, ③ 청산재산 처분결과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청산위원회가 청산보고서를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한 경우라도 회부한 청산보고서에 중요 사실의 은닉,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 혹은 기업 등록기관은 그 시정을 명한다.

11. 세관등기 말소

청산보고서를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한 날로부터 10 일 내에 세무기관과 세관에 제출하여 각각 등록말소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상등기기관에 기업등록말소수속을 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 체납금,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영수증 및 기타 세무증서를 세무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납부증명 및 반납증명을 가지고 원 세무관리기관에 세무등기 말소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12. 말소수속, 영업허가증 폐기

청산위원회는 세관등기말소 수속을 완료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세무기관과 세관에 서 교부한 등록말소 증명서류를 청산보고서와 함께 기업등록기관에 제출하여 기업등록 말소를 한 뒤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국 일간지 1 종, 법인 소재지 성급 혹은 시 급 신문 1 종에 기업종료 광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기업등록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	기업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말소등기신청서> 由企业法定代表人签署 的《注销登记申请书》	세무기관,해관에서 제출한 세금 완성 증명 税务机关、海关出具的 完税证明	원 심사비준기관의 말소를 비준하는 문서 原审批机关的批准注销 的文件
	청산보고 清算报告	이사회 결의 董事会决议	

*주) 상기 필요서류는 상해시공상행정관리국의 요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신청시 에 해당지역 심사비준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유의점】 - 기업등록말소

- ◆ 청산위원회가 위의 규정에 따라 기업등록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는 기업등록기관이 그 영업허가증을 회수하여 공고할 수 있다.
- ◆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이 완료된 후 기업등록말소 수속 전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각종 회계증빙서류, 회계장부, 회계통계표 등의 자료는 이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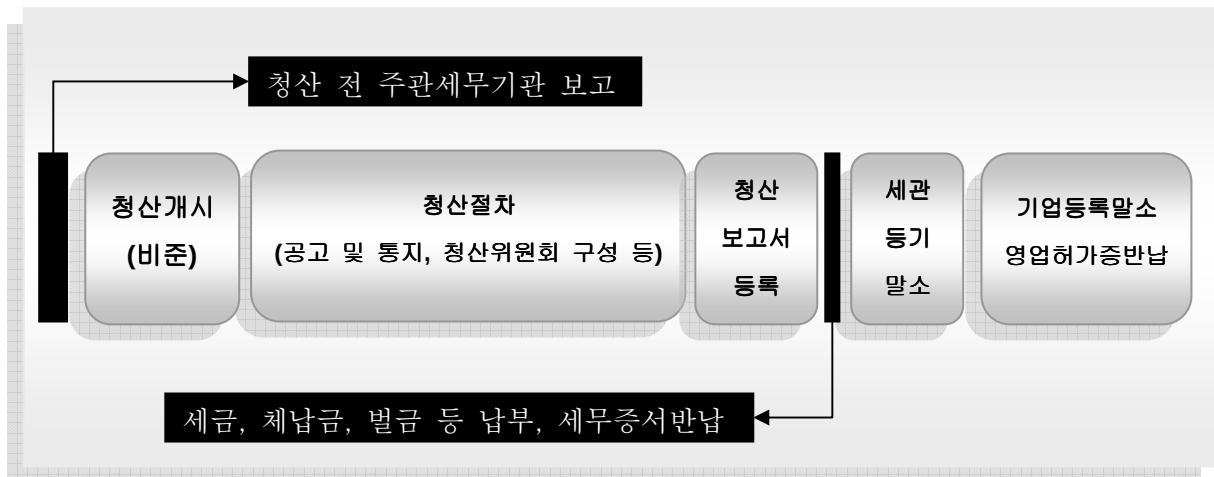
【기업자료 보관장소】

①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의 경우 중국투자자가 보관
②	중국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에서 기업주관부분이 지정하여 보관
③	외자기업의 경우 기업심사비준기관이 지정한 부문에서 보관

III. 세금분석

1. 기본절차

【주요청산절차 중의 세금관련 절차】



《세수징수관리법실시세칙(稅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제 50)조¹에 의하면 기업이 청산할 경우, 청산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를 하여야 하며 미결제 부분의 세금이 있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의 청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공상등기기관에 기업등록말소수속을 하기전에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 채납금,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영수증 및 기타 세무증서를 세무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납부증명 및 반납증명을 가지고 원 세무관리기관에 세무등기 말소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¹ 《稅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第五十条 纳税人有解散、撤销、破产情形的，在清算前应当向其主管税务机关报告；未结清税款的，由其主管税务机关参加清算。

2. 세금항목

【청산과정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세금항목】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세금	청산시 세금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미납상태인 세금
	청산기간중 계속되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세금혜택반환	‘2 면 3 감반(两免三减半)’의 세제 우대 반환
	재투자세금반환(再投資退税) 혜택의 보충납부
	지방재정혜택정책에 대한 반환 또는 보충납부
수입증치세 및 관세	수입기계 등 제품의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 보충납부
영업세 및 증치세	기업 청산 중 재산처분에 대한 납부
기업소득세	청산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납부

■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세금

- ① 청산시 세금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미납상태인 세금
- ② 청산기간중 계속되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 세금혜택반환 문제

외상투자기업이 경영기한만료 전에 청산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① 기업이 받고 있는 ‘2 면 3 감반(两免三减半)’의 세제 우대에 대해서는 청산으로 인하여 기업의 실제경영기한이 10 년이하로 될 경우, 이미 혜택을 받은 부분의 세금을 보충 납부해야 함.
- ② 기업의 재투자로 인하여 재투자세금반환(再投資退税) 혜택을 받은 기업은 청산으로 인하여 재투자기한이 5년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이미 반환된 세금을 보충 납부해야 함.
- ③ 기타 지방재정혜택정책으로 인하여 받은 혜택 등도 상기 ①, ②와 같이 반납 혹은

은 보충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음.

■ 수입증치세 및 관세

수입기계 등 제품이 해관의 관리감독 기한내에 있을 경우, 기업의 청산으로 인하여 관련 해관의 동의를 받고 해당 제품을 국내 내자회사에 매각, 양도 혹은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기한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보충납부하여야 한다.

① 감면세 수입제품을 국내의 기타 내자회사 혹은 관련 감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회사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상용기한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나머지 부분에 관한 수입관세를 해관에 보충납부하여야 함

② 국내의 기타 감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심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해관의 결제이전 수속을 마치고 나면 양도받은 기업은 계속하여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해관의 비준을 받은 외국투자자는 원 면세수입제품을 경외로 다시 가져 갈 수도 있음².

【유의점】 - 세금반환액의 확인

세금혜택정책으로 받은 세금혜택 부분과 수입증치세 및 관세문제로 세금혜택을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산결정을 하기 전에 우선 반환하여야 할 세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청산 이외의 주식양도 등 기타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기업소득세

² 《海关对外商投资企业进出口货物监管和征免税办法》第三十一条 终止或解除合同的外商投资企业，海关对其监管年限内的减免税进口货物，按以下规定办理：

（一）留给合营中方继续使用或转让、出售给国内单位的，海关应当按其使用年限折旧补税。

（二）如转让给国内其他可享受同等优惠待遇的外商投资企业使用的，经审批机关批准并办结海关结转手续后，可以继续享受减免税优惠。

（三）经海关核准，允许合营外方将原免税进口货物退运出境。

기업 청산 중에서 재산처분을 할 경우, 영업세 및 증치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 청산이 완료된 후 청산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청산소득은 기업 청산시의 전부 자산 혹은 재산에서 청산비용, 손실, 부채, 기업미배당이윤, 공익금, 공적금(公積金) 및 실제 납부한 자본을 공제한 부분을 가르킨다.

【유의점】 - 세금부분의 구체적분석

세금부분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분석은 각 청산기업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상술한 일반적인 검토보다 지역별, 기업별 상황에 맞는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산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사전에 세금문제에 관하여 전문 회계사사무소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IV. 신 파산법 특징 및 파산 절차

1. 신기업파산법 개요

2006년 8월에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이하 ‘**신기업파산법**’으로 함)의 시행 전 전민소유제기업의 파산은 1986년 12월 2일 전인대상무위 원회가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시행)》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되었고, 외상기업 등의 기타 기업법인 파산은 1991년 4월 9일 전인대가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 19장 적용이 적용되어 파산법체계는 비통일적이고 비체계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2006년 8월 27일 제 10차 전인대상무위원회 제 23차 회의에서 신기업파산법이 통과되었고,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외상투자기업의 파산은 신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게 되었다.

2. 신기업파산법 제도의 변화

1) 적용범위의 확대

구 파산제도	◆ 《기업파산법(시행)》은 전민소유제기업의 파산에 적용 ◆ 기타 기업법인 파산은 1991년 4월 9일 전인대가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 19 장 적용이 적용
신기업파산법	◆ 모든 기업법인의 파산에 적용 ◆ 외상투자기업, 국유기업도 기업법인으로서 《기업파산법》의 조정대상 ◆ 단, 국무원이 규정한 기한과 범위 내에서 국무원의 관련 규정 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유기업의 정책성파산 여지를 남김 ◆ 국무원이 규정한 특수정책실시 기한이 만료 후, 모든 국유기업의 파산도 《기업파산법》 적용

2) 기업파산사유의 수정

구 파산제도	◆ 《기업파산법(시행)》의 규정은 사유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운영 중 파산의 원인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신기업파산법	◆ 법률 시행과 법원심사의 용이성을 위해 기업파산 사유 조정 ◆ 신 《기업파산법》은 기업 파산의 원인을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자산이 전부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하면 본 법에 따라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

3) 관리인제도의 도입

구 파산제도	◆ 1986년 《기업파산법(시행)》에서는 ‘청산팀’을 규정
신기업파산법	◆ 관리인은 관련부서, 기관의 인원으로 청산팀을 구성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의 기관

	◆ 관리인이란 파산절차 중에서 채무자의 재산관리와 기타사무를 책임지는 당사자를 가리킴 ◆ 《기업파산법(시행)》에서 규정된 ‘청산팀’보다 더 정비하고 더 전문적임 ◆ 인민법원이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음 ◆ 개인이 관리인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

4) 국제파산제도

구 파산제도	◆ 국제 파산문제에 대해 속지주의를 취하여 국외의 파산절차를 승인하지 않았음
신기업파산법	◆ 중국 파산법의 경외효력을 인정 ◆ 중국법을 준수를 조건으로 외국에서 중국 파산법과 중국의 파산 절차를 승인하면 중국은 외국의 파산절차를 승인함 ◆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은 국외에 있는 재산도 중국 국내 파산 절차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됨 ◆ 외국투자자 측의 국외파산법령의 효력은 소재국 국내에 있는 외상 투자기업까지 연관됨 ◆ 법률에 따라서는 외국투자자 측이 국내의 외상투자기업에 가지는 주식에 대해서 파산을 집행할 수도 있게 됨

5) 노동채권과 담보채권의 관계조정

구 파산제도	◆ 직원의 임금과 기타 복지를 우선 정산 ◆ 무담보 재산이 부족하여 직원의 임금을 청산할 수 없는 경우, 담보재산 부분으로 청산하여야 함
신기업파산법	◆ 담보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청산 ◆ 직원 임금과 기타 복지는 담보미설정 재산으로 청산 ◆ 직원 임금문제는 앞으로 사회보장제도 완비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국 국내기업의 합병 및 투자의 리스크의 감소 효과
--	--------------------------------

6) 국유기업특혜 해제

구 파산제도	◆ 국유기업이 파산할 때 우선 전부 자금을 파산기업의 실직직원의 안치에 투입하고 기업의 채무를 상환 하지 않는 정책성 파산을 인정
신기업파산법	◆ 국유기업의 ‘특혜대우’ 즉 정책성 파산을 취소, 정책성 파산은 2008 년 말에 종결 ◆ 장기적으로 시장경제 하의 국유기업에게 공평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국유기업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7) 금융기구의 파산제도 정비

신기업파산법	◆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가 인민법원에 해당 금융기구 구조조정 혹은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음 ◆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가 금융기구에 대하여 인수나 위탁관리 조치를 취하면 인민법원은 해당 금융기구가 피고자격으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집행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음 ◆ 일부 채권자가 금융기구에 대한 재산권을 우선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감독관리기구가 진행하는 인수나 위탁관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함
--------	---

8) 허위파산, 재산도피 규제

신기업파	◆ <u>부인권 인정</u> 관리인은 파산신청 수리 1 년 전의 채무자의 파산재산 침해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음 무상 재산양도, 불합리한 가격의 거래행위,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대해
------	---

산 법	재산담보를 제공해주는 행위, 미도래 채무의 상환 행위, 채권포기 행위 ◆ <u>이사 등의 책임</u> 채무인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수입을 획득하거나 기업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관리인은 재산을 회수하여야 함
--------	--

9) 경영자 직무과실 책임

신 기 업 파 산 법	◆ 기업경영관리자, 즉 기업의 이사, 감사 혹은 고위관리자가 성실의무, 근면의무를 위반하여 소재기업의 파산을 일으킨 경우 법률에 따라 민사책임을 짐 ◆ 이러한 책임이 있는 관리층은 파산절차 종료일로부터 3 년 내에 다른 기업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자를 담당할 수 없음 ◆ 고위관리자가 법률에 따른 파산기업의 재산상황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10) 사기파산책임

신 기 업 파 산 법	◆ 인민법원의 파산수리 1 년 전 내에 기업이 파산사기행위가 있으면 파산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파산 철회신청을 할 수 있음 ◆ 기업의 파산사기행위로 채권자 또는 기타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 6 수정안에 따라 기업의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파산사기죄를 구성함 ◆ 5 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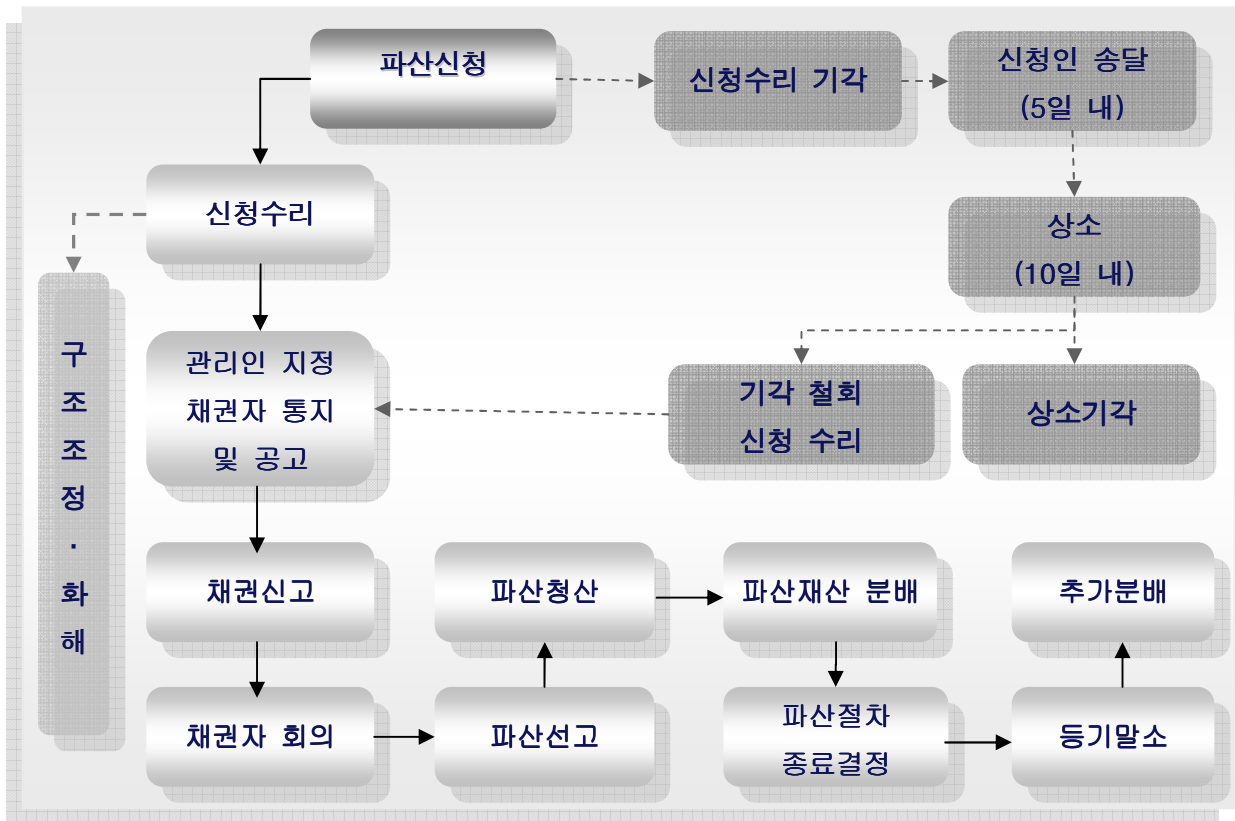
3. 파산청산의 법률절차

파산의 법률절차는 파산절차의 개시일로부터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 중에서 법원, 채무자, 채권자와 관리인이 주요하게 파산절차에 참여하

게 된다.

- a) **파산신청과 수리:** 파산신청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파산절차 개시의 기준이다. 법원은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며, 법원이 신청을 수리한 후 관리인을 지정하게 된다.
- b) **채권신고:** 채권자가 파산절차가 시작된 후 관리인에게 자신의 채권을 신고함으로써 파산절차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c) **채권자회의:** 채권자로 구성이 되고, 파산과정 중 관련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하게 되며 관리인이 감독을 한다.
- d) **구조조정:** 신기업파산법이 도입한 새로운 제도로서 구조조정의 개시는 파산신청을 한 이후에도 가능하며, 파산신청이 이루어지기 전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다.
- e) **화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연기해 주거나 또는 감면해주기로 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화해는 파산신청 이후라도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서 개시된다.
- f) **파산선고:** 채무자는 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고 기업의 자산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움을 인정하여 파산선고를 받게 되거나, 또는 구조조정절차의 중지, 화해 실패로 인하여 파산을 선고받게 된다.
- g) **파산청산:** 법원이 채무인에게 파산선고를 한 후 관리인이 파산재산에 대한 처리와 분배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h) **파산종료:** 파산청산이 완료되거나 구조조정의 완료 또는 화해협의를 집행으로 판산이 종료된다.

【파산청산의 주요절차도】



1) 인민법원에 신청

기업이 파산청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채무자 즉 기업 주소지의 인민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A) 파산신청인과 파산사유

신기업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신청자는 ①채무자, ②채권자, ③이미 해산했으나 청산하지 않거나 또는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청산책임자, ④국무원금융감독관리기구이다. 각 신청자 별로 파산신청의 사유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① 채무자	기업법인이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자산이 전부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② 채권자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③ 기업의 청산책임자	이미 해산했으나 청산하지 않거나 또는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자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④ 국무원금융감독관리기구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구가 파산하는 경우

- ① 채무자는 기업법인이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또한 자산이 전부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또는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인민법원에 구조조정, 화해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채권자는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인민법원에 채무인의 구조조정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이미 해산했으나 청산하지 않거나 또는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자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기업의 청산책임자가 인민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구가 파산하는 경우 신기업파산법은 국무원금융감독관리기구가 인민법원에 구조조정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한다고 규정하여 금융기구의 파산신청인의 자격을 금융감독관리기구에 한정하고 있다.

B) 파산신청시의 제출자료와 수리

신청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후 법원은 심사를 진행하여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신청수리를 한다. 즉 파산신청은 일정한 형식적요건과 실질적요건을 만족해야만 법원이 수리하게 된다.

형식적요건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시 파산조건을 증명할 여러 증명서류를 말하며, 실질적요건은 일반적으로 상술한 각 신청자마다 차이를 가지는 파산신청사유를 말한다. 즉 파산신청심사는 주요하게 법원이 신청인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법률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채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신청서(신청인, 피신청인의 기본상황, 신청목적, 신청의 사실과 이유, 인민법원이 요구하는 기타 기재사항), 재산상태설명, 채무리스트, 채권리스트, 관련 재무회계보고, 직공배치예비안, 직공임금지불과 사회보험납부상황 제출
	법원은 15 일 내 수리여부를 결정
채권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신청서와 관련 증명을 제출하여 신청
	법원은 신청접수일로부터 5 일 내 채무자에게 통지
	채무자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7 일 내 인민법원에 이의제기
	법원은 이의제기 기간만료일로부터 10 내 수리여부 결정
기타 신청자의 신청	법원은 15 일 내 수리여부를 결정

2) 파산신청 수리 및 기각

- A) 신청수리:**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결정일로부터 5 일 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또한 인민법원을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파산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파산사유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철회결정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역시 철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내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채권자가 신청을 하여 인민법원이 수리한 경우, 인민법원은 5 일 내 채무인에게 결정을 송달하고 채무인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5 일 내에 인민법원에 재산상황설명, 채무리스트, 채권리스트, 관련 재무회계보고 및 직공보수와 사회보험비용의 납부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 B) 신청기각:** 인민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5 일 내 신청인에게 기각이유를 설명하는 통지를 한다.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내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유의점】 - 파산신청수리 후 채무인의 주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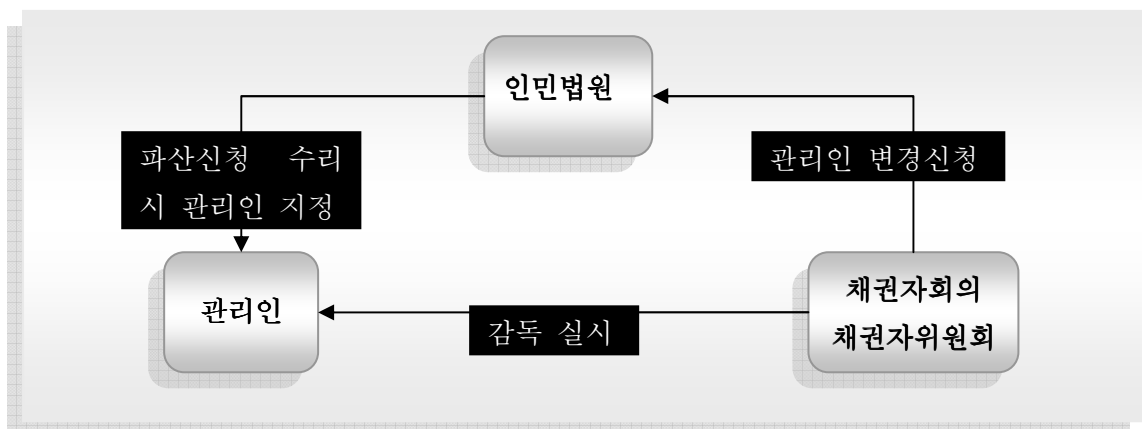
◆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채무인의 개별 채무인에 대한 채무상환 행위는 무효로 인정됨

◆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수리결정이 채무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파산절차의 종료일까지 기업의 법정대인, 법원이 결정한 채무관리자와 기타 경영관리자는 주요하게 기업재산의 관리의무, 법원, 채권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 다음의 의무를 부담하게 됨

- 점유, 관리 중인 재산, 인장과 장부, 문서 등 자료의 보관
- 인민법원, 관리인의 요구에 따른 업무집행과 질의에 대한 답변
- 채권자회의 참석, 채권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 인민법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주소지 이탈 금지
- 기타 기업의 동사, 감사, 고위관리자로 새로 겸임 금지

3) 관리인 지정 및 채권자 통지와 공고

A) 법원의 관리인 지정



인민법원은 파산신청을 수리함과 동시에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관리인은 관련 부문, 기구의 인원으로 구성된 청산팀 또는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이 맡을 수 있다. 법원은 채무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관리인을 지정하게 된다.

채권자회의가 구성된 후에 채권자회의에서 관리인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민법원에 관리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의 비용과 보수에 대해서 심사할 권리를 가진다.

B) 법원의 통지 및 공고

인민법원은 파산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5 일 내 확인된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공고한다.

4) 채권신고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수리 후, 채권자 채권 신고기간을 확정하며 그 기간은 최단 30 이상이며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채권자는 확정된 기간 내에 인민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권신청 시, 서면의 형식으로 채권의 액수와 담보설정 유무 사항과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인은 제출된 채권신고자료를 등록하고 심사를 진행하며 채권리스트를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채권리스트는 1 차 채권자회의 시에 제시되어 검토를 진행한다. 채무자, 채권자가 채권리스트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이 이를 확정하게 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인민법원에 소송이 가능하다.

5) 채권자 회의

제 1 차 채권자회의는 인민법원이 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15 일 내에 소집하여 열린다. 그 이후에는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또는 관리인, 채권자위원회, 채권

총액의 4분의 1 이상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자회의의 주석에게 회의개최를 제안하여 열린다.

인민법원은 표결권을 가진 채권자 중에서 1명의 주석을 지정하며 주석이 채권자회의를 주재한다.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는 채권자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표결권을 가지나,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표결권이 없다. 또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도 표결권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채무자의 직공대표와 공회의 대표가 채권자회의의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게 된다.

6) 파산선고

인민법원이 채권리스트를 확정하고 채무자가 구조조정 또는 화해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구조조정 또는 화해신청을 하였더라도 제출된 구조조정방안, 화해방안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파산신청기업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7) 파산청산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를 우선 상황한 후에 다음의 순위에 따라서 채권을 상환해야 한다.

①	담보채권
②	미지급된 직공의 임금과 의료, 상해보조, 부양비용, 기본 양로보험, 기본 의료보험비용 및 법률, 행정법이 규정한 보상금
③	미지급된 기타 사회보험금과 세금
④	일반파산채권

파산재산이 동순위의 상환채권을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 비율에 따라서 분배한다. 파산기업의 동사, 감사와 고위관리자의 임금은 기업직공의 평균임금에 따라서 계산된다.

8) 파산재산분배

관리인은 파산재산분배방안 작성하고 채권자회의에 제출하며, 채권자회의에서 파산재산분배방안이 통과된 후에 관리인은 방안을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인은 인민법원의 인가를 거친 파산재산분배방안에 따라서 집행한다.

파산재산의 분배는 화폐분배방식을 취해야 하나 채권자회의에서 다른 결의가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르게 된다.

9) 파산절차종료결정

파산절차의 진행과정 중에 법률이 규정한 파산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절차 종료결정을 내리게 된다.

- ① 채무자와 전채채권자가 채권채무의 처리에 대하여 협의를 달성한 경우
- ② 채권이 모두 상환되거나 제 3 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③ 채무인의 재산이 파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④ 파산자가 분배할 재산이 없는 경우
- ⑤ 파산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

관리인은 파산종료사유가 발생한 후 법원에 파산종료청구를 하며 인민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내 파산절차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10) 등기말소

관리인은 파산절차종료 결정으로부터 10 일 내에 인민법원의 파산종료결정을 소지하고 원 등기기관에서 등기말소를 해야 한다.

11) 추가분배

파산재산의 분배 후, 다시 분배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 경우 법원의 허가를 거쳐 추가분배를 할 수 있다. 즉 파산절차의 완료 후 2 년 내에 채무자가 법률에서 규정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익을 얻은 경우,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 채권자는 추가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의점】 - 파산기업의 경영자의 법률책임

- ◆ 기업경영관리자, 즉 기업의 이사, 감사 혹은 고위관리자가 성실 의무, 근면 의무를 위반하여 소재기업의 파산을 일으킨 경우 법률에 따라 민사책임을 짐
- ◆ 이러한 책임이 있는 관리층은 파산절차 종료일로부터 3 년 내에 다른 기업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자를 담당할 수 없음
- ◆ 고위관리자가 법률에 따른 파산기업의 재산상황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직 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4. 화해와 구조조정 제도 개요

1) 화해제도

화해란 파산청산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화해신청 및 화해협의초안을 제출하여 채권자회의의 통과, 법원의 허가를 받음으로서 채권자, 채무자 간의 채권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채권자의 양해, 채권액의 감액, 채권기간의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파산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신청이 가능하고, 인민법원이 이미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라고 할 지라도 파산선고 전에 인민법원에 화해를 신청가능하다.

2) 구조조정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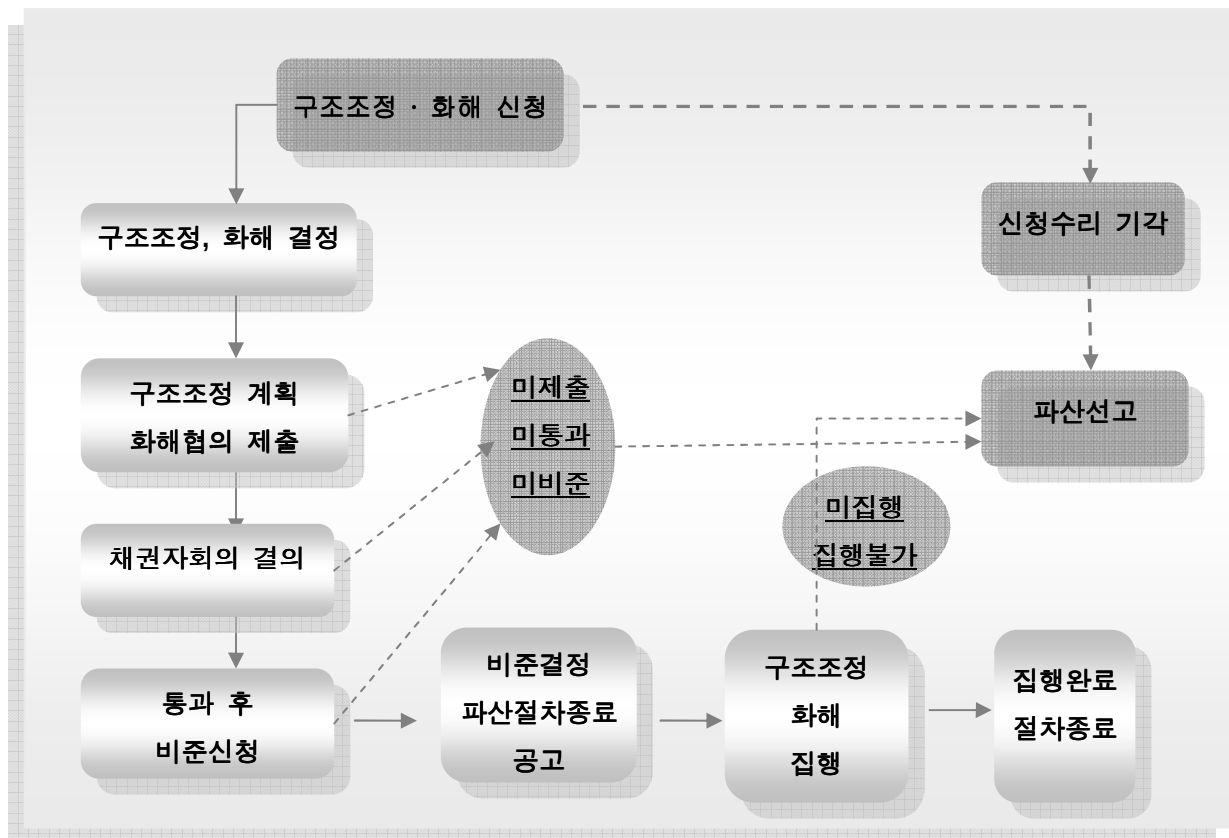
구조조정 제도란, 기업이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법률의 절차에 따라 기업이 계속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조정과 기업정리를 하여 기업이 곤경을 벗어나고 재건을 돕도록 하는 채무정리제도이다.

1986 년 파산법에서는 ‘구조조정(重整)’을 ‘정돈(整顿)’으로 칭하였으며, 화해절차와 구분되지 않고 정돈을 신청한 후 채권자와 화해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하나의 절차로만 규정했었다.

신 기업파산법에서는 이러한 구조조정제도를 파산예방 제도 중 하나로 규정하여, 법률의 한 장(章)을 할애하였고, 이는 현대국제파산법의 주요한 조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중국 시장경제법률의 한 공백을 메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화해와 구조조정의 주요절차

【구조조정 · 화해 주요절차도】



1) 화해 주요절차

화해신청	◆ 채무자는 인민법원에 신청이 가능, 파산신청이 이미 수리된 경우, 파산선고 전에 신청이 가능, 신청 시 화해협약초안 제출(제 95 조)
법원의 화해결정	◆ 인민법원은 심사 후에 공고하고, 수리 시, 채권자회의를 열어 화해초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함(제 96 조)
채권자회의 결의	◆ 회의출석한 결의권을 가진 채권자의 과반수 통과로 이루어짐 또한 찬성채권자가 소유하는 채권은 전체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채권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제 97 조)
통과 후 비준신청	◆ 채권자회의를 통과한 화해협약의는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음. 법원의 인가를 거쳐야 함
비준결정 파산절차종료 공고	◆ 법원의 인가를 거친 화해협약의 효력발생, 즉 채무자와 화해채권자(미담보채권자)에게 구속력을 가짐 ◆ 파산신청이 수리된 후에 화해가 신청된 경우, 화해협약의 효력발생 시에 파산절차는 종료됨
화해협약의 이행	◆ 채무자가 화해협약을 이행하는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음, 단, 인민법원에 화해협약의 종료를 청구하고, 채무자의 파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음.
집행완료 절차종료	◆ 기업의 계속경영

【유의점】 - 화해절차

- ◆ 파산, 구조조정과 다르게 채무자만이 신청 가능
- ◆ 화해협약의는 법원의 인가, 비준을 얻은 후에 효력발생하게 됨
- ◆ 화해협약의 구속력은 받는 채권자는 미담보채권자에 한함
- ◆ 담보권자는 법원의 비준 후에 채권 실현이 가능함
- ◆ 채무자가 화해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며, 단, 인민법원에 화해협약의 종료를 청구하고, 채무자의 파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음
- ◆ 화해채권자란 채무자에 대해서 무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말한다. 즉 담보권자

에게는 화해협의를 구속력이 미치지 않음

- ◆ 화해협의 초안이 채권자회의 결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화해절차를 중지하고 파산선고를 함
- ◆ 화해협의 통과 후에도 채무인이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화해채권자의 청구로 화해협의를 집행을 중지시키고 채무자파산을 선고할 수 있음

2) 파산구조조정(重整)의 주요절차

구조조정 신청	◆ 구조조정을 제안하거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 채권자, 투자자(등록자본의 10분의 1 이상 출자자)(제 70 조) ◆ 파산신청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파산선고 전에 구조조정 신청이 가능(제 70 조)
법원의 구조조정심사 및 결정	◆ 법원은 구조조정 신청에 대한 형식적심사와 실질적인 심사를 거친 후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함. 형식적심사는 법원의 관할권, 신청자의 자격 등, 실질적심사는 기업의 회생가능성, 기업의 가치 등 ◆ 구조조정 결정 이후, 채무자는 관리인의 감독하에 재산과 경영사무를 처리함 ◆ 채무자에 대한 담보채권자는 구조조정기간 동안 그 담보권행사가 중지됨
구조조정계획 제출	◆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인민법원의 구조조정결정 후 6 개월 내에 구조조정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법원과 채권자회의에 제출해야함(제 79 조)
통과 후 비준신청	◆ 인민법원은 초안 제출일로부터 30 일 내에 채권자회의를 개최하고 초안에 대한 결의를 진행하도록 함. 결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와 그 채권자의 전채 채권액에 대한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통과 ◆ 출자자대표는 채권자회의에 참석가능. 출자자의 권익에 영향이 있는 사항은 출자자를 조직하여 표를 행사 ◆ 법원은 통과된 구조조정계획을 인가하거나 미통과된 구조조정계획은 비준시킬 수 있음(기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비준가능)

비준결정 파산절차종료 공고	◆ 법원의 비준을 거친 후 효력발생 ◆ 파산신청이 수리된 후에 구조조정이 신청된 경우, 구조조정계획 효력발생 시에 파산절차는 종료됨 ◆ 채무자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실현이 제한을 받음
구조조종계획이행	◆ 구조조정계획은 채무자가 집행, 관리인이 감독을 진행. 채무자는 관리인에게 집행상황, 재무상황을 보고
집행완료 절차종료	◆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집행인의 청구에 따라 구조조정절차종료의 사법결정을 내림 ◆ 기업은 정상화되고, 파산, 화해, 강제집행 및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소송 등의 절차는 효력상실

【유의점】 - 구조조정 절차

- ◆ 채무인이 구조조정 신청을 한 경우, 채무인 또는 관리인은 구조조정계획 초안을 제출하여 채권자회의 결의를 통과하고,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구조조정 계획 초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채권자회의 결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또는 법원의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 ◆ 채무인의 경영상황과 재산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구제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채무인이 사기, 악의로 채무인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기타 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인민법원에 구조조정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6. 구조조정의 특징(파산, 화해와의 차이)

- 1) 구조조정 사유의 범위. 파산과 화해의 사유보다 범위가 넓음. 만기도래채무의 지불불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상황할 수 없는 가능성을 증명하는 경우도 구조조정의 사유에 포함됨.
- 2) 신청자의 범위가 넓음. 파산의 경우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며, 화해의 경우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구조조정은 채무자, 채권자, 투자자가 신청할 수 있음
- 3) 파산 등에 비해 국가공권력이 미치는 정도가 높음. 구조조정의 통과, 관리인의 임명 등

- 4) 구조조정 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 화해의 경우 채권자의 양해, 채권기한의 연장 등이 주요한 방법으로 사용되나, 구조조정은 이밖에도 기업의 양도, 합병, 자산증권화, 전환채권, 자본감자 등 기업의 자본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회사의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음
- 5)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진행중인 일반민사소송, 집행이 중지되는 것 이외에 진행 중이던 파산절차, 화해절차도 중지되며, 파산, 화해, 구조조정의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 6) 구조조정절차가 시작되면, 담보권자 또한 그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며, 담보권의 실현에 제한은 받게됨
- 7) 목적의 범위가 넓음. 파산과 화해는 만기채무가 변제되지 못할 경우, 다수채권자의 공평한 채권실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구조조정은 이 뿐만아니라, 채무인의 생산경영능력, 경영지속, 사회안정 등의 목적으로 함

V. 결 론

기업이 청산을 할 경우 구체적인 절차, 각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및 이러한 법률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통청산’, ‘파산청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별청산’의 경우 법률적, 실무적으로 진행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청산을 고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파산청산’의 경우, 구체적 절차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에 따르게 된다.

중국청산, 파산제도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외상기업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로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계약법, 환경법 및 세금분야의 정책 등 중국의 기업경영환경이 날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철수를 위한 방법으로서 청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기업에게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법률적인 측면 이외에도 중국의 현실상황을 이해하고 실무 중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기업청산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완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원: KING&WOOD 정상훈 변호사)

청산기업 회계 세무처리 사례

합법적인 청산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정상적인 청산 절차를 밟아가기에는 난관이 너무나 많다. 조세우대혜택의 전제조건 등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거나 임차공장의 원상회복요구와 잔여 임차기간에 대한 임대료요구, 직원에 대한 경제보상금과 미납 사회보험료 재원 부족, 관할 세무국의 세무조사 부담 등등이다. 기업경영이 어려워 청산을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난제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식 청산절차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해법을 찾은 사례들을 소개하여 철수를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참조가 되기를 바란다.

1) 10년 경영기간 미충족 ; S 중소기업 사례

- 회사개황: 종업원 150명, 외형 연간 5백만불 수출, 목재소품제조, 자본금 \$200,000, 한국지분 100%(투자자 한국인 개인 2명), 2년면제 3년반감 조세감면혜택, 경영기간 6년, 공장 3000평방미터, 5년임대.
- 문제점: 2명의 한국인 투자자가 관리와 생산의 역할을 분담하여 6년간 경영을 하였으나 채산성 악화로 청산을 하기로 하였으나 10년 경영기간 미충족으로 난관에 봉착
- 해법결과: S기업의 한국인 경영진은 약 6개월의 준비 끝에 하청기업 중 성실하게 납품을 하고 있는 중국인 왕사장에게 S기업인수를 제안하여 한국인 투자자중 생산담당자가 상주하여 인수후에도 1년간 생산 및 기술지도를 한다는 조건으로 성사시킴. 단 투자자는 한국인 명의로 지속하고 법인대표는 중국인 왕사장으로 변경함.
- 준비과정: 하청기업 왕사장이 그 동안 수년간의 거래과정에서 보여준 성실한 자세로 볼 때 인수자로서 적격하다는 판단을 한 후 왕사장이 인수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함.

1. 미지급금의 해소: 경비와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여 인수시점인 2007년 12월말에는 미지급금을 최대한 축소함
2. 공장의 이전: 왕사장은 본인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연 300,000 위엔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임대인인 촌 서기에게 협조를 부탁함. 촌서기는 난색을 표하였으나 초상국 중국 전직 관리의 도움을 받아 1개월치의 임대료와 S기업이 자비로 신축한 종업원 기숙사동(약 300,000 위엔 상당)을 기증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함

3. 경영기간의 지속:투자자는 한국인 명의로 지속하고 중국인 왕사장이 법인대표로서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므로 4년의 잔여기간 충족 문제가 해결됨

2)임대기간 미도래: J 중소기업

- 회사개황:종업원 100 명, 외형 연간 6 백만불 진료가공 수출,전자부품, 장기간 결손으로 조세감면혜택 받은 바 없음, 생산설비는 5 년의 관리기간 경과함, 7 년간 경영, 임대기간 20 년.
- 문제점:주거래처의 도산과 재산성 악화로 공장 철수를 하여야 하나 종업원의 재배치문제와 잔여기간 임대료 보상요구가 예상됨
- 해법결과: 종업원에게 조업중단의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자 종업들이 자진 퇴사를 함(퇴사하는 직원에게는 경제보상금을 지급).임대인에게 1 년치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청산 절차 개시함
- 준비과정;
 - 1.수출용원부자재의 핵소:진료가공으로 수입한 수출용원부자재의 미사용분은 본사로 반송하거나 이관하여 해관의 규정 위배가 없도록 함
 - 2.종업원재배치:종업원들에게는 회사의 사정을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여 계속 잔류하여도 무방하나 조업을 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잔류하는 경우 기본급만 지급할 수 없음을 이해시킴(사직하는 경우는 구노동법에 따라 1 개월치 경제보상금을 지급).약 6 개월에 걸쳐 종업원들이 새로운 직장을 스스로 찾아 이직함. 그 기간 중에는 조업 중단한 상태에서도 출근 직원에게 기본급을 지급
 - 3.임대료 보상: 한국 출장후 또는 명절 등에 총경리가 임대인을 찾아가 식사를 대접하거나 임대인 부인의 선물을 준비하는 등 6 개월 이상 지속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한 후 회사 사정을 설명하여 합의를 이룸.

3)시사점

S 기업 사례의 경우 한국인 투자자가 인수자인 왕사장의 입장에서 인수후에도 기업경영에 애로 사항이 없도록 일반적인 정황과 달리 미지급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 성사될 수 있었음. 즉 양도자와 인수자 모두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임.

J 기업 역시 종업원과 임대인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제보상금지급과 1 년치의 임대료 보상등 성실한 자세를 보임으로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취할 수 있었음.

또한 두 사례 모두 미지급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철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되 일방적인 이득만을 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 즉 철수로 인한 쌍방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됨.

(정보원: 칭다오 ABC 자문회사 최상훈 회계사)

면세수입설비의 청산절차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외상투자기업에는 최초 투자할 당시 장려항목으로 인정받거나 혹은 임가공을 위한 면세수입 무상제공설비를 한국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 설비의 면세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한의 만료 여부를 기준으로 중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2006 년 11.5 규획 이래 임가공무역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박하게 악화되고 있고, 청산절차를 밟거나 밟고 있는 기업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임가공무역을 위하여 들여 왔던 면세수입 무상제공설비에 대한 처리도 합법적으로 마쳐야 한다.

1. 기업이 무상제공설비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무슨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가?

1) 무상제공설비는 외투기업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경영기업은 수입에 대하여 외화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가공비나 대금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

2) 기업은 독립 전문적으로 가공무역에 종사(즉 내수판매제품을 생산하는데 종사하지 않음)하는 공장 혹은 작업현장에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무상제공설비는 단지 당해 공장 혹은 작업현장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기업이 독립 전문적인 공장이나 작업현장에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가공무역계약 기한 내에는 기업의 매년 가공제품의 7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2. 가공무역 무상제공 수입설비란?

가공무역외상투자기업이 제공하는 무상제공수입설비는 가공무역경영 기업과 가공무역(내료가공, 진료가공 및 외상투자기업이 종사하는 가공무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전개하는 외상(해외기업)이 무상으로 즉 경영기업이 수입대금을 결제할 필요가 없고 또한 가공비나 차액으로써 상환하는 방식도 불필요한 것으로, 경영기업에 제공되는 가공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이른다. 면세수입 무상제공설비는 《외상투자프로젝트에서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 수입상품목록》에 예시된 상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기업이 수입시 가공무역계약상에 무상제공수입설비의 조항(즉 외상기업이 무상방식으로

제공하며, 가공무역 경영기업이 수입대금을 결제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가공비나 차액을 상환 관련 설비 조항을 명시)을 반드시 명기하고 있어야 한다.

무상제공 면세수입에는 반드시 다음의 예 중의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

- 가공무역에 독립적 전문적으로 종사(즉 내수판매물품의 가공생산에 종사하지 않음)하기 위한 공장 혹은 작업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무상제공설비는 오직 당해 공장 또는 작업실에서만 사용된다.

- 가공무역에 독립적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공장 혹은 작업실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현재의 가공생산능력을 기초로 가공무역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무상제공설비를 사용하는 가공생산기업은 가공무역계약(협약) 기한 내, 당해 연도 가공생산품의 70% 이상의 물품을 반드시 수출해야 한다.

무상제공설비의 해관의 관리감독기한은 5 년으로 한다. 가공무역경영기업은 매년 1 월 외경무 주관부문과 관할 해관에 표준양식의 서류로써 면세수입무상제공설비의 사용상황을 보고한다.

3. 기업은 무상제공설비의 해관관리감독의 해제수속을 어떻게 밟는가?

해관의 관리감독기한이 만료하지 않았거나 이미 만료한 무상제공설비의 재반출에 대하여, 해관은 기업의 신청서와 관련 증빙을 근거로 관리감독해제수속을 처리한다. 해관관리감독기한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관리감독의 사전해제신청을 하고, 아직 반출하지 않은 무상제공설비는 기업이 세금을 추후 납부한 후 해관은 관련 수입허가증, 검험검역증서 및 관련 증빙에 근거하여 관리감독해제수속을 처리한다.

해관의 관리감독기한이 이미 만료되고 포기를 신청한 무상제공설비는 해관은 직접 기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수속을 처리한다.

해관의 관리감독기한이 이미 만료되고 가공무역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무상제공설비에 대하여, 기업은 관련 수입허가증, 검험검역증서와 세금의 징수를 면제하고, 해관에 직접 관리감독해제수속을 밟을 수 있다. 1998 년 1 월 1 일 이후 수입된 무상제공설비의 해관관리감독이 이미 만료되었고, 최초 수입기업에 있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는 기업은 세금을 면제받지만, 관련 수입허가증, 검험검역증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해관에 관리감독해제수속을 밟아야 한다.

4. 무상제공설비의 관리감독 해제 수속

1) 무상제공설비는 수입한 날로부터 재반출할 때까지 그리고 해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제하는 날까지 해관관리감독화물에 속한다. 관리감독기한은 5 년으로 하며, 관리감독기한 내, 마음대로 국내에서 판매, 교환, 양도, 저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 가공무역을 위하여 면세수입된 무상제공설비를 다시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 및 수입 단계의 증치세를 납부하였거나, 해관의 관리감독기한을 넘긴 경우, 경영기업은 제 때에 관리감독해제수속을 하여야 한다.

3) 경영기업은 해관에 관리감독해제수속을 할 때 관리감독 해제를 요구하는 서면신청서와 설비 (등기수책)등 유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5. 해관의 수입설비에 대한 관리감독기한 및 그 계산방법

선박 비행기 및 건축재료(강재, 목재, 베니어 합판, 유리 등)는 8 년

자동차와 가정용 전기제품은 6 년

기기설비와 기타 설비, 재료는 5 년

원칙적으로 당해 수입설비의 실제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만약 기업의 실제사용기간이 관리감독기한의 절반을 초과하였고, 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사용에 투입되지 못할 때에는 관할 해관에 보고하고 그 미사용한 시간을 관리감독기한 내에 계상할 수 있다.

6. 감면세 설비의 관리감독의 해제

설비가 이미 해관의 관리감독기한을 다 채운 경우,외경위(대외무역경제합작국)의 심사비준을 거쳐, 해관에 설비수책, 수입물자심사비준 원본, 수입신고필증 원본을 제출하고, 외경위의 심사비준을 거친 관리감독을 해제하고자 하는 설비의 명세서를 보고하고, 해관에 관련 설비의 관리감독해제수속을 신청한다.

관리감독기한이 만료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국내기업(동등한 특혜를 받는 외상투자기업을 포함하지 아니함)에 설비를 이전하거나 내수판매하는 경우 해관의 비준을 얻은 후, 수입 후의 사용시간에 따른 감가상각한 가격 평가에 의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은 당해 설비를 국외로 반출할 수도 있다.

기업이 설비의 관리감독해제수속을 할 때에는 설비의 관리감독 해제보고(외경위를 경유하여 의견서를 첨부할 것) 설비수책, 수입신고필증, 내료가공기업의 외상의 설비의 재산권의 포기를 원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기업이 차량의 관리감독해제수속을 할 때에는 아래의 자료를 반드시 검사 받아야 한다. 기업이 신청하는 관리감독해제보고서(외경부문 날인), 신청표, 연간 정기심사카드(원본), 수입심사비준표(원본), 수입신고필증(원본), 화물수입증명서(사본) 2 부, 운전면허증(복사본) 2 부, 차량부가세 납부증명(복사본), 차대 및 엔진 번호 탁본 2 부, 차량이 개인명의로 수입을 위탁하여 타인이 처리할 때 검사차주가 서명한 위탁서와 위탁을 받는 사람의 신분증 복사본 및 차주의 신분증 복사본. 개인의 명의로 수입한 것은 당해 기업의 인장을 날인한 위탁서와 위탁 받는 자의 신분증 복사본

7. 무상제공설비의 관리감독 해제

가공무역계약의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관리감독기간이 만료한 경우, 무상제공설비는 반드시 해외로 반송되어야 한다. 만약 해외로 반송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것은 해관에 포기신청을 할 수 있고, 해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포기한 무상제공설비를 처리한다. 만약, 기업이 생산가공이나 자신의 수요에 따라 무상제공설비를 계속 사용하여야 할 경우, 해관에 무상제공설비의 관리감독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해관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관리감독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 수입증치세를 납부하고 수입허가증 및 기타 수입통관서류를 구비해야 해관에서 해제 수속을 해 주는 것이다.

관리감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업체에서 신청하여 기전관리판공실에서 비준해 주는 증명서에 근거하여 감독 해제 수속을 해 줄 수 있다. 수입관세, 증치세도 동시 면제된다.(1998.1.1 전에 수입된 것은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기간만료 전에 해제 신청시 혹은 1998 년 1 월 1 일 후 수입하고 관리기간 만료 후 계속 중국 경내 사용시 검역국에서 검역증서를 받고 나서야 관리 해제 수속을 받고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8. 업체장부 정리 규범

1) 감면세 방식으로 수입하는 설비는 반드시 “고정자산” 혹은 “진행중인 공정” 장부에 기입해야 하고, 고정자산 대장이나 카드로 만들어야 된다. 경영을 위하여 임대한 설비 등 업체에 소유권은 없으나 사용권만 있는 설비 및 무료제공 감면세수입설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장 혹은 카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된다. 감면세 설비를 취득시, 당시의 실제원가대로 관련 장부에 기록해야 하며, 관련 명세장부나 카드장부에 금액과 수량을 기록해야 한다.

2) 감면세 설비를 양도, 판매, 임대, 내부이전, 저당, 대외투자, 처분, 훼손, 분실 등 상황에서는 모두 관련 장부에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

3) 감면세 방식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관한 보관단(수입신고필증), 계약서, 인보이스, 보험서류, 운송서류, 허가증, 수책 등 수출입관련 서류는 수입되었을 때부터 3 년간의 복사본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관련 법률책임 : 감면세 방식으로 수입되는 설비를 비준받은 다음에 중국 국내서 양도 혹은 중국 국내 내수판매 목적인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규범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9. 설비수입의 감면세, 무상제공의 심사 비준 및 관리감독 해제에 관한 규정과 업무 처리

적용대상

-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이 출자하는 기기설비
- 투자총액내의 자금으로써 수입하는 기기설비
- 증자액으로써 수입하는, 국내에서 생산 공급할 수 없는 기기설비. 이상 설비는 모두 부품과 기타 재료(공장 및 설비 및 고정설비에 소요되는 재료)

신청방법 : 기업은 화물수입 전에 외경위에서 비준한 계약서의 설비 명세서 등 증빙을 지참하고 관할 해관에서 면세 심사비준수속을 밟는다. 해관은 비준 후 면세증명을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3 개월로 하고 관할해관의 허가를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유관규정

1) 2002 년 10 월 1 일 이후 새로 비준한 “생산품을 전량 직접 수출하는 허가류 외상투자항목(증자를 포함한다)” 프로젝트로써 수입하는 설비는 일률적으로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한다. 당해 프로젝트의 조업개시일로부터 완성품의 수출상황의 실사를 거쳐 매년 이미 납부한 세액의 20%씩을 반환하고 5 년 내 전부를 반환한다. 만약

전량수출상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해 년도의 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각 항목에서 이미 반환했던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2) 2002 년 10 월 1 일부터 1996 년 4 월 1 일 이전 비준된 관련 투자항목에서 잉여한도 내에서 수입한 설비는 《외상투자항목에서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 상품목록》에서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는 면세로 수입한다. 단독으로 수입한 설비의 부품은 규정에 의하여 징세한다.

3) 신규로 설립등록한 외상투자기업은 외경위에 가행성보고 답변 중 규정된 기한 내에 등록자본금을 납부 완료해야 하는 동시에, 험자(자본금 납입 확인) 후의 1 개월 이내에 해관에 감면세심사 비준부문에 험자(자본금 납입확인)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자본을 납입하지 못한 외상투자기업은 감면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4) 기업이 만약 프로젝트 관련사항을 변경 신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외경위의 답변을 얻은 후 즉시 해관에 프로젝트 변경 등록수속을 밟음으로써, 《면세증명》수속을 할 때, 기업의 실제상황과 해관 등록내용이 불일치하는 상황을 피한다. 해관감면세 시스템에 등록 되지 않은 외상투자기업은, 미리 해관에 가서 등록수속을 밟고 변경수속을 할 수 있다.

5) 해관이 이미 발급한 《면세증명》에 대하여, 기업이 제때에 혹은 정상적으로 수입을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해관의 감면세 심사비준부문에 가서 변경 혹은 폐기수속을 밟는다. 외상투자기업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생산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미 수입한 설비를 동등한 감면세 혜택을 받는 여타 기업에게 양도하는 것은, 해관의 비준을 거쳐 결전수속을 할 수 있다. 설비를 양도하는 기업은 감면세 한도를 되살리지 못한다. 설비양수기업은 설비의 양도기업에서의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한 가격에 따라, 감면세 한도를 삭감한다. 양도양수된 설비의 관리감독기한은 최초 수입통관수리일부터 계속하여 계산한다.

(정보원: 변재서 청다오 무역관 고문컨설턴트)

외국투자기업 청산방법

1996 년 7 월 9 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외국투자기업 청산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채권자와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법에 따라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이하 기업이라 약칭함)의 청산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기업이 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했을 경우에는 관련 파산청산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조 기업이 자체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방법 보통청산 관련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기업이 자체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할 수 없거나 보통청산규정에 따라 청산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업의 이사회나 공동관리위원회 등 의결기구(이하 기업의결기구라 약칭함), 투자자 혹은 채권자는 기업 심사비준기관에 특별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심사비준기관이 특별청산을 비준하였을 경우에는 본 방법 특별청산 관련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기업이 법에 따라 파산령을 받고 해산되어 청산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 특별청산 관련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제 4 조 기업의 청산은 반드시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미 인가된 기업 계약서.정관의 기초 위에서 공정.합리하게, 기업.투자자.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보통청산

제 1 절 청산기한

제 5 조 기업청산 개시일은 기업경영기한 만료일, 혹은 기업심사비준기관의 기업해산비준일, 혹은 인민법원의 기업계약중지 판결일, 혹은 중재기구의 기업계약중지 재결일이다.

제 6 조 기업청산기한은 청산개시일로부터 기업심사비준기관에 청산보고서를 회부한 날까지이며 최고 180 일을 넘지 못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 청산기한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청산위원회가 청산기한만료 15 일전에 기업심사비준기관에 청산기한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연장기한은 최고 90 일이다.

제 7 조 기업은 청산기간에 신규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 2 절 청산기구

제 8 조 기업이 청산하는 경우에는 기업의결기구가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개시일로부터 15 일 내에 성립되어야 한다.

제 9 조 청산위원회는 최소 3 명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해당기업의 의결기구가 구성원 중에서 선정하거나 관련 전문요원을 초빙하여 담당하게 한다. 청산위원회는 주임 1 명을 두며 의결기구에서 임명한다. 청산위원회는 의결기구의 동의를 얻고 작업요원을 초빙하여 청산의 구체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조 청산기간에 다음 상황중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청산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1. 청산위원회 구성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채권자의 청구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청산위원회 구성원이 사망했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제 11 조 청산위원회는 청산기간에 다음 직권을 행사한다.

1. 기업 재산의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청산안 제정
2. 미확인 채권자를 위한 공고, 확인된 채권자에 대한 서면통지
3. 청산과 관련한 기업현안 업무처리
4. 재산평가 및 계산의거 제출
5. 체납세금청산
6. 채권.채무 정리
7. 기업채무 상환 후 잉여재산 처분
8. 기업대표로 민사소송활동 참가

제 12 조 청산위원회가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제출한 재산평가 및 계산근거와 청산안은 의결기구가 확인한 후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 13 조 청산위원회의 성립후 기업의 관련 직원은 청산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기업의 회계통계표, 재무장부, 재산목록, 채권자.채무자명부 및 청산관련 기타 자료를 청산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청산위원회는 법에 따라 청산의무를 이행하고 협상원칙에 의거 청산 관련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 구성원은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불법소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업재산을 침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 조 청산기간에 기업심사비준기관과 기타 관련 주관기관은 기업 청산 관련회의에 출석하여 기업의 청산작업을 감독할 수 있다.

제 3 절 통지와 공고

제 16 조 기업은 청산개시일로부터 7 일 내에 기업의 명칭.주소.청산원인.청산개시일자 등을 기업심사비준기관, 기업주관부문, 세관, 외환관리기관, 기업등록기관, 세무기관, 기업구조개설행 등 관련단위에 서면통지하여야 하며 기업에 국유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자산관리행정주관부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청산위원회는 성립일로부터 10 일 내에 확인된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여 채권청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성립일로부터 60 일 내에 최소 2 회 전국일간지 1 종과 당지 省級 혹은 市級신문 1 종에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 1 차 공고문은 청산위원회 성립일로부터 10 일 내에 게재하여야 한다.

청산공고문에는 기업명칭.주소.청산원인.청산개시일, 청산위원회 연락주소, 구성원 명단 및 연락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 채권자는 통지 접수일로부터 30 일 내에, 통지를 접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 1 차 공고일로부터 90 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채권자는 규정된 기한내에 채권청구와 아울러 채권액수 및 채권 관련 증명자료를 회부하여야 한다.

채권청구기한내에 채권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확인된 채권자의 채권은 청산에 산입한다.
2. 미확인 채권자의 채권은 기업잉여재산의 배분결속 전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잉여재산 배분결속 후에는 채권포기로 간주한다.

제 4 절 채권·채무와 변제

제 20 조 청산위원회는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을 등록하고 사정·확인한 후 그 결과를 채권자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청산위원회의 사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재사정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재사정결과에 대하여 의연히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사정 서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내에 기업소재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와 기업이 중재약정을 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여야 한다. 소송 혹은 중재기간에 청산위원회는 분쟁대상재산을 배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2 조 청산위원회는 청산기간에 발생한 재고손익, 매각, 상환불능채무와 회수불능채권, 청산기간의 수입과 손실 등에 대하여 의결기구에서 서면설명과 증명을 제시하고 이를 청산손익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 23 조 하기 청산비용은 청산재산에서 우선 지불하여야 한다.

1. 기업 청산재산의 관리·매각·배분에 소요되는 비용
2. 공고·소송·중재비용
3. 청산과정에 지불하여야 할 기타비용

제 24 조 청산 개시일전에 발생한 재산담보채권의 채권자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한을 가진다. 재산담보채권의 액수가 담보물 환가소득액을 초과할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본 방법 제 25 조에 규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다.

제 25 조 청산재산은 청산비용을 우선 지불한 후 다음 순서에 따라 변제한다.

1. 종업원의 노임, 근로보험비
2. 국가세금
3. 기타 채무

제 26 조 청산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기업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기업재산을 배분하지 못한다. 청산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기업재산은 투자자의 실제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단, 법률·행정법규 혹은 기업계약·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 27 조 청산과정에 기업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청산위원회는 인민법원에 기업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할 경우에는 파산청산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청산한다.

제 28 조 청산개시 전 180 일 내에 발생한 기업의 하기 행위는 무효이다.

1. 기업재산의 무상양도
2. 비정상적 덤핑가격에 의한 기업재산매도
3.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
4. 채무의 기한 만료전 상환
5. 본 기업 채권의 포기

청산개시일로부터 청산결속일까지 중외투자자는 기업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제 5 절 청산재산의 평가와 처분

제 29 조 청산재산의 평가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기업 계약.정관에 규정이 있는 것은 기업 계약.정관에 따른다.
2. 기업 계약.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중외투자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기업 계약.정관에 규정이 없고 중외투자자가 협의하여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청산위원회가 국가의 관련 규정 및 자산평가기구의 의견을 참조하여 확정하고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법원이 기업의 계약중지를 판결했거나 중재기구가 기업의 계약중지를 재결하고 청산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판결 혹은 재결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30 조 청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기업투자자에게 우선 구매권이 있으며 높은 가격을 신고하는 측이 구매한다.

제 6 절 청산의 종료

제 31 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안에 규정한 작업을 끝낸 후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청산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괄되어야 한다.

1. 청산의 원인.기한.과정
2. 채권.채무 처리결과
3. 청산재산 처분결과

제 32 조 청산보고서는 의결기구의 확인을 받은 다음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 33 조 청산위원회는 청산보고서를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한 날로부터 10 일 내에 세무기관과 세관에 각기 등록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전항의 수속을 완료한 날로부터 10 이내에 청산보고서, 세무기관과 세관에서 교부한 등록말소증명서류를 기업등록기관에 보고하여 기업등록말소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함과 아울러 전국일간지 1 종, 당지 省級 혹은 市級신문 1 종에 기업종지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 34 조 기업의 청산이 완료된 후 기업등록말소수속을 하기 전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회계증빙, 회계장부, 회계통계표 등 자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1.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중국측투자자가 보관하고 중국측투자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주관부문이 지정한 기업에서 보관한다.
2. 외자기업은 기업심사비준기관이 지정한 단위에서 보관한다.

제 3 장 특별청산

제 35 조 기업심사비준기관이 특별청산을 비준한 날 또는 기업이 법에 의하여 파산령을 받은 날이 특별신청 개시일이다.

제 36 조 기업이 특별신청에 들어갈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이나 그가 위임한 부문이 중외투자자, 관련 기관의 대표, 관련 전문요원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37 조 청산위원회는 주임 1 명을 두며 기업심사비준기관이나 그가 위임한 부문에서 지정한다. 특별청산기간에는 청산위원회 주임이 기업 법정대표의 직권을 행사하고 청산위원회가 의결기구 직권을 행사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 관련사무를 처리하고 그 활동을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한다.

제 38 조 청산위원회는 기업의결기구 회의와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청산 관련 구체사항을 토의할 수 있다.

제 39 조 모든 채권자는 다 채권자회의 구성원이며 채권자회의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재산담보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권한을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권자회의 대표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이나 그가 위임한 부문이 유권 채권자중에서 지정한다.

제 40 조 채권자회의는 청산위원회가 소집한다. 청산위원회는 채권자회의 소집 15 일전에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자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 41 조 채권자회의는 하기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가 제공한 채권 관련 증명자료, 채권액수 및 담보상황을 심사한다.
2. 채무 변제상황을 파악하고 청산위원회에 청산안 및 채무 변제상황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을 제출한다.

제 42 조 청산위원회가 제정한 청산안과 작성한 청산보고서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특별청산에 대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방법 제 2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장 법률 책임

제 44 조 청산기간에 기업이 신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기관이 그 시정을 명하고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5 조 기업이 본 방법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 내지 않거나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등록기관이 그 시정을 명하고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6 조 중외투자자가 본 방법 제 2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산기간에 기업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이 처분한 재산의 원상복구 혹은 반환을 명하고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 47 조 청산위원회가 본 방법 제 32 조,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보고서를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지 않고 기업등록기관에 보고하지 않거나 청산보고서에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 기업등록기관이 그 시정을 명한다.

청산위원회가 본 방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 등록말소 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등록기관이 그 영업허가증을 회수하여 공고한다.

제 48 조 기업이 청산기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명세서에 허위기재하거나, 청산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기업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기업의 재산을 배분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 기업등록기관이 그 시정을 명하고 기업등록기관에서 기업이 은닉한 재산 또는 기업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기 전에 배분한 기업재산액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책임이 있는 요원에게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9 조 청산위원회 구성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로 불법소득을 취득했거나 기업의 재산을 침점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 기업등록기관이 침점한 기업재산의 반환을 명하고, 기업등록기관이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불법소득의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0 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장 부 칙

제 51 조 본 방법은 반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번역: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파산법

(2006 년 8 월 27 일 제 10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3 차 회의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 54 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을 2006 년 8 월 27 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10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3 차 회의에서 채택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胡錦濤
2006 년 8 월 27 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기업파산 절차를 규범화하고 채권, 채무 청산을 공정하게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기업법인이 만기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자산이 채무를 완전 변제하기에 부족하거나 변제능력이 명확히 결여한 경우 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한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이나 변제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확인한 기업법인은 이 법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할 수 있다.

제 3 조 파산사안은 채무자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4 조 파산사안 심리절차와 관련하여 이 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민사소송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조 이 법에 따라 개시한 파산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밖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도 유효하다.

법률효력을 발생한, 파산사안 관련 외국법원의 판결, 재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재산과 관련되고 인민법원에 그에 대한 인정, 집행을 신청 또는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공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심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및 사회 공공이익을 손상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한, 인정하고 집행을 재정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파산사안 심리 시에 법에 따라 기업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파산기업 운영 관리인의 법률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 2 장 신청과 접수

제 1 절 신 청

제 7 조 이 법 제 2 조가 규정한 상황이 있는 채무자는 인민법원에 정리절차, 화해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정리절차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 법인이 이미 해산하였으나 청산하지 않았거나 청산을 필하지 않았으며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법에 따라 청산책임을 부담한 자가 인민법원에 파산청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산신청서에는 하기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신청자와 피 신청자의 기본상황

(2) 신청일자

(3) 신청사실과 이유

(4) 인민법원이 명기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이밖에 자산상황 설명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재무회계 관련 보고서, 종업원 안치 예정방안 및 노임지급상황과 사회보험료 납부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신청자는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신청취하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 절 접 수

제 10 조 인민법원은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입수한 날로부터 5 일 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통지를 입수한 날로부터 7 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의 만기일로부터 10 일 내에 접수여부를 재결하여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파산신청을 입수한 날로부터 15 일 내에 수리여부를 재결하여야 한다.

특수상황으로 앞 두 항이 규정한 접수기한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직상급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고 15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파산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재정한 날로부터 5 일 내에 신청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정한 날로부터 5 일 내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재정 송달일로부터 15 일 내에 인민법원에 재산상황 설명서, 채무자명부, 채권자명부, 재무회계 관련보고서 및 종업원 노임 지급,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접수거부를 재정한 경우 재정한 날로부터 5 일 내에 신청자에게 송달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재정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재정 송달일로부터 10 일 내에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부터 파산선고 전까지의 심사기간에 채무자가 이 법 제 2 조가 규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신청기각을 재정할 수 있다. 재정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재정 송달일로부터 10 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 13 조 인민법원은 파산신청 접수를 재정함과 동시에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인민법원은 파산신청 접수 재정일로부터 25 일 내에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통지와 공시에는 하기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신청자와 피 신청자의 명칭 또는 성명
- (2) 인민법원 파산신청 접수일시
- (3) 채권 신고기한, 장소, 주의사항
- (4) 관리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그 사무장소
- (5) 관리인에게 채무변제 또는 재산이관 관련 채무자의 채무자 또는 재산소지자에 대한 요구
- (6) 제 1 차 채권자회의 소집 일시와 장소
- (7) 인민법원이 통지와 공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 15 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접수 재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날로부터 파산절차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채무자의 관련자는 하기 각호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1) 그가 점유하고 관리하는 재산, 인감과 장부, 문서 등 자료를 차실 없이 보관하고
- (2) 인민법원과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하며
- (3) 채권자회의에 방청하여 채권자의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하고
- (4) 인민법원의 인가 없이 주소지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 (5) 여타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전항이 관리인이라 함은 기업의 법정대표자를 말하며 인민법원이 정하는 경우 재무관리임원과 기타 경영관리임원을 망라할 수 있다.

제 16 조 인민법원이 청산신청을 접수한 후에 진행된 개별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무효이다.

제 17 조 인민법원이 청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채무자 또는 재산 소지자는 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채무자 또는 재산 소지자가 고의로 전 항 규정을 위반하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이관하여 채권자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그의 채무변제 또는 재산이관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인은 파산신청 전에 체결하고 채무자나 상대측 당사자가 모두 이행을 필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해지 또는 계속 이행을 결정하고 상대측 당사자에게 통지할 권한이 있다. 관리인이 파산신청 접수일로부터 2 개월 내에 상대측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대측 당사자의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리인이 계약의 계속 이행을 결정한 경우 상대측 당사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단, 상대측 당사자는 관리인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리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9 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재산 관련 보전조치를 해지하고 집행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이미 개시하였으나 종료하지 아니한 채무자 관련 민사소송 또는 중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당해 소송 또는 중재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한 후 계속한다.

제 21 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 관련 민사소송은 파산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제 3 장 관리인

제 22 조 관리인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채권자회의가, 관리인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기타 상황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경질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인 지정 및 관리인 보수 확정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

제 23 조 관리인은 이 법 규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인민법원 앞에 업무를 보고하며 채권자회의 및 채권자위원회의 감독을 접수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채권자회의에 방청하여 채권자회의에 업무 집행상황을 보고하고 질문에 대답하여야 한다.

제 24 조 관리인은 관련 부문과 기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청산팀이나 법에 따라 설립한 변호사 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파산청산 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가 담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채무자 실정에 근거하여 사회 관련 중개기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당해기구 임직원 중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직업자격을 취득한 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을 담당하지 못한다.

- (1) 고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2) 직업자격 증서를 몰수당한 일이 있는 자
- (3) 당해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 (4) 인민법원이 관리인 인선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이 있는 자.

관리인을 담당하는 개인은 직업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25 조 관리인은 하기 각호의 직책을 이행한다.

- (1) 채무자의 재산, 인감과 장부, 문서 등 자료 인수
- (2) 채무자 재산상황 조사, 재산상황 보고서 작성
- (3) 채무자의 내부관리사무 결정
- (4) 채무자의 일상지출과 필요한 기타 지출 결정
- (5) 제 1 차 채무자회의 소집 전에 채무자 영업 계속여부 결정
- (6) 채무자 재산의 관리와 처분
- (7) 채무자 대표로서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법률절차 참가
- (8) 채권자회의 소집제의
- (9) 인민법원이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직책.

이 법이 관리인의 직책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을 준용한다.

제 26 조 관리인이 제 1 차 채권자회의 소집 전에 채무자의 영업 계속여부를 결정하거나 이 법 제 69 조가 규정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하는 때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7 조 관리인은 근면하게 직책을 다하고 직무에 충직하여야 한다.

제 28 조 관리인은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고 필요한 직원을 초빙할 수 있다.

관리인의 보수는 인민법원이 확정한다. 채권자회의가 관리인의 보수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는 경우 인민법원에 제의할 권한이 있다.

제 29 조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퇴하지 못한다. 관리인의 사퇴는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채무자의 재산

제 30 조 파산신청 접수 시에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전부, 그리고 파산신청 접수 후부터 파산절차 종료 전까지의 기간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다.

제 31 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기 전 1 년 내에 채무자 재산관련 하기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 (1) 재산의 무상양도행위
- (2) 확실히 불합리한 가격으로 진행한 거래행위
- (3)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대한 재산담보 제공행위
- (4) 만기 전 채무 상환행위
- (5) 채권 포기행위.

제 32 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기 전 6 개월 내에 채무자가 이 법 제 2 조 제 1 항이 규정한 상황이 있고 개별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개별채무 상환으로 하여 채무자가 수익을 본 경우는 예외이다.

제 33 조 채무자 재산관련 하기행위는 무효이다.

- (1) 채무 포탈을 위한 재산 은닉, 이전
- (2) 채무 허구, 또는 허위채무 인정.

제 34 조 이 법 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가 규정한 행위로 하여 취득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인은 회수할 권한이 있다.

제 35 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출자자가 출자의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인은 당해 출자자에게 출자기한에도 불구하고 출자불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6 조 관리인은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취득한 비정상수입과 점유한 기업의 재산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 37 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인은 채무변제 또는 채권자가 접수하는 담보제공을 통하여 질물과 유치물을 회수할 수 있다.

전항이 규정한 채무변제 또는 담보대체 시 질물 또는 유치물의 가치가 담보목적 채권 액보다 적은 경우 당해 질물과 유치물의 당시 시장가치에 한한다.

제 38 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가 점유한 재산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부분은 당해 재산의 유권자가 관리인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 단,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이다.

제 39 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할 때 매출자가 표적물을 매입자인 채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채무자가 접수하지 못하고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자가 운송 도중에 있는 표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 단, 관리인이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매출자에게 표적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 40 조 파산신청 접수 전에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무는 관리인에게 채무상쇠를 주장할 수 있다. 단, 하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쇠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신청 접수 전에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타인의 채권인 경우.

(2) 채권자가, 채무자가 만기채무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 또는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단, 채권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또는 파산신청 1 년 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예외이다.

(3) 채무자의 채무자가, 채무자가 만기채무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 또는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채권을 취득한 경우. 단, 채무자의 채무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또는 파산신청 1 년 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채권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 5 장 파산비용과 공익채무

제 41 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에 발생한 하기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파산비용이다.

(1) 파산사안의 소송비용

(2) 채무자 재산의 관리, 현금화 및 분배비용

(3) 관리인의 직무 집행비용과 보수 및 직원 초청비용.

제 42 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에 발생한 하기 각호에 해당하는 채무는 공익채무이다.

(1) 관리인이나 채무자가 양측이 모두 이행을 필하지 아니한 계약의 이행을 상대방에 청구하는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

- (2) 채무자의 재산이 관리인의 책임 이외의 원인으로 입은 손실의 채무
- (3) 채무자의 부당한 이윤으로 발생한 채무
- (4) 채무자의 계속영업을 위하여 지불한 노동보수와 사회보험료 및 이로 하여 발생한 기타 채무
- (5) 관리인 또는 관련자의 직무집행으로 타인의 손상을 초래하여 발생한 채무
- (6) 채무자의 재산이 타인의 손상을 초래하여 발생한 채무.

제 43 조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수시로 변제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과 공익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파산비용을 우선 변제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 또는 공익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비율에 따라 상환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파산절차 종지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내에 파산절차 종지를 재정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 6 장 채권 신고

제 44 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을 향유하는 모든 채권자는 이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다.

제 45 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의 채권신고 기한을 확정하여야 한다. 채권신고 기한은 인민법원 파산신청 접수 공시일로부터 기산하고 최소 30 일 이상, 최고 3 개월 이내로 한다.

제 46 조 비 만기채권은 파산신청 접수와 동시에 만기로 간주한다.

금리 부가채권은 파산신청 접수와 동시에 금리계산을 중지한다.

제 47 조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소송·중재 미결채권은 채권자가 신고할 수 있다.

제 48 조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체불한 종업원의 노임, 의료·상이 보상비, 위자료와 종업원 개인 계좌에 불입할 기본 양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및 법률, 행정법규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상금은 신고할 필요 없이 관리인이 조사하여 명세서를 공시한다. 명세서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는 종업원은 관리인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인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제 49 조 채권자의 채권신고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액수와 재산담보의 유무를 설명함과 동시에 관련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대채권 신고는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50 조 연대채권은 대표자 1 명이 채권자 전체를 대표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채권자 전체가 공동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제 51 조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기타 연대채무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으로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기타 연대채무자가 채무자 대리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미래 구상권으로 관리인에게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단, 채권자가 관리인에게 채권전액을 신고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 52 조 연대채무자 수 명에게 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준용하기로 재정된 경우 그 채권자는 채권 전액을 각각 당해 파산사안에서 채권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53 조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이 법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실 배상청구권으로 채권을 신고한다.

제 54 조 채무자가 위탁계약의 위탁인이고 이 법 규정을 준용하기로 재정하였지만 당해 수탁인이 모르고 계속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수탁인은 이로 발생한 청구권으로 채권을 신고한다.

제 55 조 채무자가 어음발행인이고 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적용하기로 재정하였으며 당해 어음지불인이 계속 지불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지불인은 이로 하여 발생한 청구권으로 채권을 신고한다.

제 56 조 인민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파산재산 최종분배 전에 보충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 전에 이미 진행된 분배는 보충 분배하지 아니한다. 보충 신고한 채권확인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보충 신고자가 부담한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이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 57 조 관리인은 신고 자료를 접수한 후 등록부에 등록하고 신고한 채권을 심사함과 아울러 채권그래프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권그래프와 채권신고 자료는 관리인이 보관하고 이해 관련자의 조회에 제공한다.

제 58 조 이 법 제 57 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채권그래프는 제 1 차 채권자회의에 회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권그래프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확인한다.

채권그래프에 기재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무자와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제 7 장 채권자회의

제 1 절 일반 규정

제 59 조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채권자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채권자회의에 출석할 권리가 있고 표결권을 향유한다.

미확정 채권의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그의 표결권 행사를 위한 채권 액을 임시로 확인한 외에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채권자로서 우선 상환권을 보기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제 61 조 제 1 항 제 7 호, 제 10 호가 규정한 사항의 표결권을 향유하지 못한다.

채권자는 대리인을 위임하여 채권자회의에 출석하고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에 출석하는 대리인은 인민법원 또는 채권자회의의 주석에게 채권자의 수권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채권자회의는 채무자의 종업원과 노조대표가 참가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제 60 조 채권자회의는 주석 1 명을 두며 인민법원이 표결권을 향유하는 채권자 중에서 지정한다.

채권자회의는 채권자회의의 주석이 집행한다.

제 61 조 채권자회의는 하기 각호의 직권을 행사한다.

- (1) 채권 검사확인
- (2) 인민법원에 관리인 경질 신청, 관리인의 비용과 보수 심사
- (3) 관리인에 대한 감독
- (4) 채권자위원회 구성원 선임 및 경질
- (5) 채무자 영업 계속 또는 중지 결정
- (6) 정리절차계획 통과
- (7) 화해합의서 통과
- (8) 채무자의 재산 관리방안 통과
- (9) 파산재산 현금화방안 통과
- (10) 파산재산 분배방안 통과
- (11) 인민법원이 채권자회의가 행사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직권.

채권자회의는 토의한 사항의 의결 관련 회의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62 조 제 1 차 채권자회의는 인민법원이 소집하고 채권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5 일 내에 소집한다.

그 후의 채권자회의는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또는 관리인, 채권자회의, 채권총액의 1/4 이상을 소지한 채권자가 채권자회의 주석에게 제의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 63 조 채권자회의 소집 시에는 15 일 전에 관리인이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4 조 채권자회의의 결의는 회의에 출석한, 표결권을 소지한 채권자 과반수로 통과하고 그가 대표한 채권 액이 무 재산담보 채권총액의 1/2 이상을 점하여야 한다. 단, 이 법이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채권자가, 채권자회의 결의가 법률규정에 위배되고 그의 이익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권자회의가 의결한 날로부터 15 일 내에 인민법원에 결의 취소를 재정하고 채권자회의의 의법 재의결을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 결의는 전체 채권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 65 조 이 법 제 61 조 제 1 항 제 8 호, 제 9 호가 나열한 사항은 채권자회의 표결결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이 법 제 61 조 제 1 항 제 10 호가 나열한 사항은 채권자회의가 2 회 표결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앞 두 항이 규정한 재정은 인민법원이 채권자회의에서 선포하거나 채권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수 있다.

제 66 조 채권자가 이 법 제 65 조 제 1 항 규정에 따른 인민법원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채권 액이 무 재산담보 채권총액의 1/2 이상을 점한 채권자가, 이 법 제 65 조 제 2 항 규정에 따른 인민법원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정 선포일 또는 통지 입수일로부터 15 일 내에 당해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의기간에 재결의 집행은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채권자위원회

제 67 조 채권자회의는 채권자위원회 결성을 결의할 수 있다. 채권자위원회는 채권자회의가 선임한 채권자대표와 채무자의 종업원대표 또는 노조대표 1 명으로 구성한다. 채권자위원회 구성원은 9 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채권자위원회 구성원은 인민법원이 서면결정으로 인가하여야 한다.

제 68 조 채권자위원회는 하기 각호의 직권을 행사한다.

- (1) 채무자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한 감독
- (2) 파산재산 분배에 대한 감독
- (3) 채권자회의 소집에 대한 제의
- (4) 채권자회의가 위임한 기타 직권.

채권자위원회는 직권 행사시에 관리인과 채무자 관련인원에게 그 직권범위 내 사무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서류 제공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관리인과 채무자 관련인원이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위원회는 감독사항에 대한 인민법원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5 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 69 조 관리인의 하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즉시 채권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토지, 가옥 등 부동산 권익 양도행위
- (2) 광산 탐사권, 채취권, 지적재산권 등 재산권 양도행위
- (3) 재고품 또는 영업 전반 양도행위
- (4) 차입금 차입행위
- (5) 재산담보 설정행위
- (6) 채권과 유가증권 양도행위
- (7)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이행을 필하지 아니한 계약 이행행위
- (8) 권리 포기행위
- (9) 담보물 회수행위
- (10) 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기타 재산 처분행위.

채권자위원회를 결성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인의 전항의 행위를 즉시 인민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정리절차

제 1 절 정리절차 신청과 정리절차 기간

제 70 조 채무자나 채권자는 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정리절차를 직접 인민법원에 신청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청산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부터 채무자의 파산을 선포하기 전까지 채무자 또는 출자액이 채무자 등록자본금의 1/10 이상을 점하는 출자인이 인민법원에 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제 71 조 인민법원은 심사결과 정리절차신청이 이 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 정리절차를 재정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 72 조 인민법원이 채무자 정리절차를 재정해서부터 정리절차 종료까지가 정리절차기간이다.

제 73 조 정리절차 기간에 채무자가 신청하고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으면 채무자가 관리인의 감독 하에 자체로 재산을 관리하고 영업사무를 진행할 수 있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사무를 인수 관리하는 관리인은 재산과 영업사무를 채무자에게 이관하고 이 법이 규정한 관리인의 직책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제 74 조 재산과 영업사무 관리책임을 부담한 관리인은 채무자의 경영관리직원을 초청하여 영업사무를 책임지게 할 수 있다.

제 75 조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특정재산 담보권 향유자는 잠시 담보권 행사를 중지한다. 단, 담보물의 손상 또는 가치의 현저한 절하가 가능하여 담보인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보인이 인민법원에 담보권 행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계속 영업을 위해 차입금이 차입할 경우 당해 차입금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제 76 조 채무자가 타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당해 재산 권리자가 정리절차기간에 회수하려 하는 경우에는 원 약정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 77 조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출자인은 투자수익 분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은 그가 소지한, 채무자의 주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단,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제 78 조 정리절차 기간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 또는 이해 관련자가 청구하면 인민법원이 정리절차 절차 중지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1) 채무자의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만회할 가망성이 적은 상황
- (2) 채무자가 사기 또는 악의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기타 행위를 하는 상황
- (3) 채무자의 행위로 하여 관리인의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상황.

제 2 절 정리절차계획의 작성과 인가

제 79 조 채무자나 관리인은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정리절차를 재정한 날로부터 6 개월 내에 동시에 인민법원과 채권자회의에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기간이 만료되고 채무자나 관리인이 정당한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3 개월 연기를 재정할 수 있다.

채무자나 관리인이 규정기간에 정리절차계획초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리절차 절차중지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 80 조 채무자가 자체로 재산과 영업사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작성한다.

관리인이 재산과 영업사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정리절차계획초안을 작성한다.

제 81 조 정리절차계획초안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망라하여야 한다.

- (1) 채무자의 경영방안
- (2) 채권 유형
- (3) 채권 조정방안
- (4) 채권 변제권방안
- (5) 정리절차계획 집행기한
- (6) 정리절차 계획집행 감독기한
- (7) 채무자 정리절차에 유익한 기타 방안.

제 82 조 하기 각호 채권의 채권자는 정리절차계획을 토의하는 채권자회의에 출석하고 하기 채권 분류에 따라 조를 나누어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표결한다.

- (1)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채권
- (2) 채무자 미지급 종업원 노임과 의료 . 상이 보조금, 위자료, 미지급 종업원 개인 계정에 불입할 기본 양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및 법률, 행정법규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상금
- (3) 채무자의 체불세액
- (4) 일반 채권.

인민법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 채권자 조(組)에 소액채권자 조(組)를 내와서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표결하게 할 수 있다.

제 83 조 정리절차계획에는 채무자가 체불한, 이 법 제 82 조 제 1 항 제 2 호가 규정한 이외의 사회보험료 감면을 규정하지 못한다. 당해 비용 채권자는 정리절차계획초안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제 84 조 인민법원은 정리절차계획초안 접수일로부터 30 일 내에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표결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동일 표결조의 채권자 과반수가 찬동하고 그들이 대표하는 채권 액이 당해 조 채권총액의 2/3 이상을 점하는 경우 당해 조에서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무자나 관리인은 채권자회의에서 정리절차계획초안을 설명하고 질문에 대답하여야 한다.

제 85 조 채무자의 출자인 대표는 정리절차계획초안 토의를 위한 채권자회의에 방청할 수 있다.

정리절차계획초안이 출자인의 권익조정 사항과 관련될 경우 출자인 팀을 내와서 당해 사항을 표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 86 조 각 표결조가 모두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경우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정리절차계획초안 통과일로부터 10 일 내에 인민법원에 정리절차계획초안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검사하여 이 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내에 인가를 재정하고 정리절차절차를 중지함과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87 조 일부 표결조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나 관리인이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하지 못한 표결 조와 협상할 수 있다. 당해 표결 조는 협상 후 1 회로 재 표결할 수 있다. 양측의 협상결과가 기타 표결조의 이익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리절차계획초안 표결조가 재 표결을 거부하거나 재 표결에도 불구하고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정리절차계획초안이 하기 각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정리절차계획초안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정리절차계획초안에 따라 이 법 제 82 조 제 1 항 제 1 호가 나열한 채권의 당해 특정재산이 전액 변제받을 수 있고 그 변제연체로 인한 손실을 공평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동시에 그 담보권이 실질적 손해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표결조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경우

(2) 정리절차계획초안에 따라 이 법 제 82 조 제 1 항 제 2 호, 제 3 호가 나열한 채권이 전액 변제받을 수 있거나 또는 상응한 표결 조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경우

(3) 정리절차계획초안에 따라 일반 채권의 변제비율이 정리절차계획초안 비준 제출 시 파산청산 절차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비율보다 낮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표결 조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경우

(4) 정리절차계획초안의 출자인 권익조정이 공평, 공정하거나 또는 출자인조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경우

(5) 정리절차계획초안이 동일 표결 조 구성원을 공평하게 대하였고 채권 변제순위 관련규정이 이 법 제 113 조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6) 채무자의 경영방안이 사업성을 구비한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결과 정리절차계획초안이 전항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내에 인가를 재정하고 정리절차절차를 중지하는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88 조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하지 못하였고 또 이 법 제 87 조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미 통과한 정리절차계획초안이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정리절차 중지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정리절차계획의 집행

제 89 조 정리절차계획은 채무자가 집행한다.

인민법원이 정리절차계획 인가를 재정한 후 재산과 영업사무 관리를 인수한 관리인은 재산과 영업사무 관리를 채무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 90 조 인민법원 정리절차계획 인가 재정일로부터 정리절차계획이 규정한 감독기간 내에는 관리인이 정리절차계획 집행을 감독한다.

감독기간 내에 채무자는 정리절차계획 집행상황과 채무자의 재무상황을 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1 조 감독기간 만료 시에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감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관리인의 감독직책이 종지된다.

정리절차계획 이해관련자는 관리인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감독보고서를 조회할 권리가 있다.

관리인이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정리절차계획 집행 감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92 조 인민법원이 인가를 재정한 정리절차계획은 채무자와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모두 구속력을 가진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정리절차계획 집행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정리절차계획 집행을 필한 후 정리절차계획이 규정한 동일 유형 채권 변제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정리절차계획으로 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93 조 채무자가 정리절차계획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리인 또는 이해관련자의 청구에 따라 정리절차계획 집행을 중지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정리절차계획 집행중지를 재정한 경우 정리절차계획에서 한 채권조정을 위한 채권자의 약속은 효력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정리절차계획 집행으로 받은 변제는 유효하며 채권에서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파산재산으로 한다.

전항이 규정한 채권자는 동 순위의 기타 채권자가 그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은 후에 계속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이 조 제 1 항이 규정한 상황은 정리절차계획 집행에 제공한 담보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 94 조 정리절차계획에 따라 감면한 채무는 정리절차계획 집행을 완료한 후부터 채무자가 더는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9 장 화 해

제 95 조 채무자는 이 법 규정에 따라 직접 인민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도 있다.

화해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화해 합의서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96 조 인민법원의 심사결과 화해신청이 이 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해를 재정하고 공시하는 동시에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화해초안을 토의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특정재사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권리자는 인민법원의 화해 재정일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97 조 채권자회의가 화해합의서 결의를 통과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한, 표결권자 과반수가 찬동하고 그들이 대표한 채권 액이 무 재산담보 채권총액의 2/3 이상을 점하여야 한다.

제 98 조 채권자회의가 화해합의서를 통과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가를 재정하고 화해절차를 중지함과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채무자에게 재산과 영업사무를 이관하고 인민법원에 직무 집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9 조 채권자회의 표결에서 화해합의서초안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권자회의에서 통과한 화해합의서초안이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화해절차 중지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 100 조 인민법원이 재정하여 인가한 화해합의는 채무자와 화해채권자 전체에게 모두 구속력을 가진다.

화해채권자라 함은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는 때 무 재산담보권 향유하는 채권자를 지칭한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화해채권자는 화해합의 집행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화해합의 집행 완료 후에 화해합의서가 규정한 변제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101 조 채무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 책임자에 대하여 화해채권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화해합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02 조 채무자는 화해합의서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 103 조 채무자의 사기 또는 기타 불법행위로 인하여 성립한 화해합의는 인민법원이 무효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화해채권자가 변제받은 채권은 여타 채권자가 변제받은 동등한 범위까지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04 조 채무자가 화해합의를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화해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화해합의 집행중지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화해합의 집행중지를 재정한 경우 화해채권자가 화해합의 시에 한 채권조정 약속은 효력을 상실한다. 화해채권자가 화해합의 집행과정에 향유한 채권변제는 유효하고 화해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전항이 규정한 채권자는 여타 채권자가 자기가 변제받은 비율과 동등한 비율까지 변제받은 후부터 계속 변제받을 수 있다.

이 조 제 1 항이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화해합의 집행에 제공한 담보는 계속 유효하다.

제 105 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가 전체 채권자와 채무처리 관련합의를 달성한 경우 인가를 재정하고 파산절차 중지를 선고할 것을 인민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 106 조 화해합의에 따라 채무를 감면한 경우 채무자는 화해합의 집행을 필한 시점부터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0 장 파산청산

제 1 절 파산선고

제 107 조 인민법원이 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 재정한 날로부터 5 일 내에 채무자와 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재정한 날로부터 10 일 내에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한 후 채무자는 파산자라 칭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산이라 칭하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시점에 채무자에 대하여 향유하는 채권은 파산채권이라 칭한다.

제 108 조 파산선고 전에 하기 각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절차 중지를 재정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1)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또는 채무자의 만기채무를 전액 청산한 상황

(2)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전액 상환한 상황.

제 109 조 파산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권리자는 당해 특정재산에 대한 변제우선권을 향유한다.

제 110 조 이 법 제 109 조가 규정한 권리를 향유하는 채권자가 변제우선권을 행사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한다. 변제우선권을 포기한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한다.

제 2 절 현금화와 분배

제 111 조 관리인은 적시에 파산재산 현금화방안을 작성하여 채권자회의의 토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채권자회의가 통과하였거나 또는 인민법원이 이 법 제 65 조 제 1 항 규정에 따라 재정한 파산재산 현금화방안에 따라 적시에 파산재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여야 한다.

제 112 조 파산재산의 현금화를 위한 매각은 경매를 통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회의가 별도의 결의를 한 경우는 예외이다.

파산기업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화할 수 있다. 기업은 현금화 매각 시에 무형자산과 기타 재산을 단독으로 매각할 수 있다.

국가규정이 경매를 불허하거나 양도를 제한하는 재산은 국가가 규정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113 조 파산재산은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를 우선 변제한 후 하기 각호가 나열한 순위로 변제한다.

(1) 파산자가 체불한 종업원의 노임과 종업원 의료.상이 보조금, 위자료, 체불한, 종업원 개인계좌에 불입하여야 하는 기본 양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및 법률, 행정법규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상금

(2) 파산자가 체불한, 전호 규정 이외의 사회 보험료와 파산자가 체불한 세액

(3) 일반 파산채권.

파산재산이 동일 순위의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할 경우 동일 비율로 분배한다.

파산기업의 이사, 삼사, 고급 관리임원의 임금은 당해 기업 종업원의 평균노임으로 계산한다.

제 114 조 파산재산의 분배는 통화분배 방식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회의가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 115 조 관리인은 적시에 파산재산 분배방안을 작성하여 채권자회의의 토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파산재산 분배방안에는 하기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파산재산 분배에 참가하는 채권자 명칭이나 성명, 주소
- (2) 파산재산 분배에 참가하는 채권 액수
- (3) 분배에 제공할 수 있는 파산재산 액수
- (4) 파산재산 분배순위, 비율 및 액수
- (5) 파산재산 분배 실시방법.

관리인은 채권자회의가 파산재산 분배방안을 통과한 후 당해 방안을 인민법원의 재정에 회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6 조 인민법원이 파산재산 분배방안을 재정, 인가한 후 관리인이 집행한다.

관리인이 파산재산 분배방안에 따라 수차에 나누어 분배하는 경우 매차 분배시의 분배재산 액과 채권 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최종분배 시 관리인의 공시에는 이 법 제 117 조 제 2 항이 규정한 사항을 지명하고 명시하여야 한다.

제 117 조 관리인은 발효 조건부 또는 해제 조건부 채권의 분배액을 인출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전항 규정에 따라 분배액을 인출하는 경우 최종분배 공시 일에 발효조건에 미달하였거나 해제조건에 도달하였다면 기타 채권자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최종분배 공시 일에 발효조건에 도달하였거나 해제조건에 미달하였다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18 조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분배액은 관리인이 인출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최종분배 공시 일로부터 만 2 개월이 지나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배 수령권리 포기로 간주하고 관리인이나 인민법원이 인출한 분배액을 기타 채권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 119 조 파산재산 분배 시에 소송이나 중재 미결채권은 관리인이 그 분배액을 인출하여야 한다. 파산절차 종지일로부터 만 2 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인출한 분배액을 기타 채권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 3 절 파산절차의 종지

제 120 조 파산자가 분배에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지 재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최종분배를 필한 후 인민법원에 파산재산 분배보고서를 제출하고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지 재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관리인의 파산절차 종지 재정청구 접수일로부터 15 일 내에 파산절차 종지여부를 재정하여야 한다. 종지를 재정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한다.

제 121 조 관리인은 파산절차 종지일로부터 10 일 내에 인민법원의 파산절차 종지재정을 지참하고 파산자의 원 등록기관에서 등록 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122 조 관리인은 등록 말소수속을 필한 익일부터 직무집행을 중지한다. 단, 소송 또는 중재 미결상황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 123 조 이 법 제 42 조 제 4 항 또는 제 120 조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를 종지한 날로부터 3 년 내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파산재산 분배방안에 따라 추가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 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 제 36 조 규정에 따라 추가 회수할 재산을 발견한 상황

(2) 파산자가 분배에 제공하여야 할 재산을 발견한 상황.

전항이 규정한 상황이 있으나 재산이 양적으로 분배에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분배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국고에 상납한다.

제 124 조 파산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는 파산절차 종지 후 파산청산절차에 따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법에 따라 계속 변제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1 장 법률 책임

제 125 조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이 충직성 의무, 근면성 의무를 위반하여 기업의 파산을 초래하였다면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전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파산절차 종지일로부터 3 년 내에 어떤 기업에서도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을 담임하지 못한다.

제 126 조 채권자회의에 방청할 의무를 진 채무자의 관련 인원이 인민법원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회의에 방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이 호출하고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채무자의 관련 인원이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진술, 대답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 대답을 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27 조 채무자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인민법원에 재산상황 설명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채무회계 관련보고서 및 종업원 노임 지급상황과 사회 보험료 납부상황 제출을 거부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재산상황 설명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채무회계 관련보고서 및 종업원 노임 지급상황과 사회 보험료 납부상황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그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인에게 재산, 인감과 장부, 문서 등 자료 이관을 거부하거나 재산 관련 증거자료를 위조, 소멸하여 재산상황을 불명하게 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그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28 조 채무자가 이 법 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 규정 위반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 경우 채무자의 법정대표자와 기타 직접책임자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29 조 채무자의 관련자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주소지를 이탈한 경우 인민법원이 훈계, 구속하고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30 조 관리인이 이 법 규정에 따라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업무집행에 충직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 3 자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31 조 이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2 장 부 칙

제 132 조 이 법 시행 후 파산자가 이 법 공포일 전에 체불한 종업원의 노임과 종업원의 의료.상이 보조금, 위자료, 체불한, 종업원 개인계좌에 불입하여야 하는 기본 양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및 법률, 행정법규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상금은 이 법 제 113 조 규정에 따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부분은 이 법 제 109 조가 규정한 특정재산에서 당해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한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 133 조 이 법 시행 전에 국무원이 규정한 기한과 범위 내에서 국유기업의 파산을 실시한 특수사례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4 조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구가 이 법 제 2 조가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가 인민법원에 당해 금융기구의 정리절차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가 중대한 경영위험이 발생한 금융기구에 대하여 법에 따라 인수관리, 위탁관리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당해 금융기구를 피고로 또는 집행대상으로 한 민사 소송절차 또는 집행절차 종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구가 파산하는 경우 국무원이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35 조 기타 법률이 기업법인 이외 조직의 청산을 규정하였고 그것이 파산청산에 속하는 경우 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 136 조 이 법은 200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시범)》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번역: 대한상공회의소)